

제40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3월27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1)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현안질의
1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3)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2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3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
3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
3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
3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3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3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
4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4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4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4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
4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6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6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6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6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6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7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5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5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5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5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5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 5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 5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 5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 5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 5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1) 5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3. 현안질의 6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8
1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8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3) ... 38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8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8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8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 51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1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1
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66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66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6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6
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79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79
2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79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79
3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 79
3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 80

3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	80
3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80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80
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80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80
3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80
3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80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80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80
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	80
4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80
4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80
4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80
4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	80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	80
4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4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6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	80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90
6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90
6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90
6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90
6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0
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0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92
6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	92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2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2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2
7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2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93
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93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4
7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4
7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94
7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4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한 후 다른 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1)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동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칙에 위치하도록 조 번호를 변경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해당 협정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며 ‘외국인·이민정책’을 협정상 용어, 연구원의 명칭 등을 감안하여 ‘이민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동민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소송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판례를 참고하여 부당소송을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규정하도록 법문을 보완하였으며 소권 및 항소권 남용에 대한 과태료를 총칙 부분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장의 범위와 접수 보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지법 개정안의 소장 접수보류 제도에 상응하도록 법문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식 의원, 이성만 의원, 조은희 의원, 박상혁 의원, 서영교 의원,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해당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주소 불명,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확정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의 임차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모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과 법안심사1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

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현안질의

(10시25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시간은 6분으로 하고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핵심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

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다수결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 절차가 정당하게 되었을 때에만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과거 현재 결정에서도 실질적 다수결이 중요하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실질적 다수결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그리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그리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지만 단 한 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의회의 권한 중에서 입법권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다면 국회가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벗어나서 의원들의 토론·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루어진 그 다수결은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현재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전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꿈수·위장 탈당에 의해서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법무부에서 했던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시행

령입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고요,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인데 갑자기 현재에서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시행령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 그 논리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기사가 났는데 이제명 대표가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부분,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심각한 그리고 위증을 교사했고 그게 거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인이었는데, 그의 위증교사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현재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고,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국민들께서는 의심하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보도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꿈수 탈당에

대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꿈수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가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안녕하세요.

○**김승원 위원**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지난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님과 검사 6인이 청구한 데 대해서 일단 각하가 나온 것은 확인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현재 선고 취지를 보니 ‘법무부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서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 6인의 경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 입법에 의해서 조정·배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 고유의 입법사항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일단 공직자니까 인정을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존중하고 인정하시는 것은 맞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

○**김승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

거든요. 장관께서 이것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네 분은 그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장관님,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의 청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승원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유효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예전의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려면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 법무부가 원래 제헌국회 때부터 검사들에 대해서 제헌국회 의원님들이 예정했던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 수사는 지금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뭐 15만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이 있고 수사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장 일선에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경찰 조직이고 검찰은 그 수

사가 잘 되었는지 또 수사를 받는 국민이나 그런 입장에서 기본권을 존중해 주는 역할로 다시 시행령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말씀드린 쟁패, 위증, 무고 이런 것 왜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가요?

○**김승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령을 안 바꾸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그런 예전 기준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무효확인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입법 자체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 서로 얘기했지만……

○**김승원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랑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위법·무효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또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보지만 도대체 쟁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승원 위원** 장관님이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지금 수사의 거의 90% 이상은 다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기소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증이나 무고 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지나요?

○**김승원 위원** 아니, 이백몇십만 건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에서 다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위증이나 무고 수사가 경찰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

○**김승원 위원** 위증·무고를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법정을 지금 검사가 들어가는데, 위증 사건 자체를 검사가 수사 안 해 가지고 기소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통계적으로 별로 없을 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법원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 어떤 공익의 문제가 있습니까? 공익이 훨씬 증진되고 있지요.

게다가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확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지요. 쟁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 장관님, 위증·무고 인지 건수보다 상대방·당사자가 위증이라든가 무고로 고발을 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증·무고를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알면서 왜 그러세요? 다 알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증 수사를……

○**김승원 위원** 아니, 검찰에서 위증 인지 건수가 1년에 몇 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건수를……

○**김승원 위원** 위증 고소·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몇 건입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증 제가 건수로 말씀드릴게요.

○**김승원 위원** 고소·고발로 인한 위증 수사가 훨씬 많잖아요. 그것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그런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고 그러세요?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인지 건수 몇 건입니까, 검찰 인지 건수가?

○**법무부장관 한동훈**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승원 위원** 얼마 안 하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것.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 저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먼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5월에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인사 검증 영역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됐나? 저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음지에서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순신 케이스를 가지고 살펴봅시다.

이게 정순신 케이스의 타임라인입니다. 2월 25일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바로 그날 경찰청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경찰청이 법무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인정을 하고 3일 뒤에 한동훈 장관께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3일이 제가 마음에 걸려요. 한 장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시는데 왜 유독 인사 검증에 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이고 뒤늦게 발언을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일 법무부 관계자가 ‘검증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정순신 우리가 검증했는지 자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발표 한 장관하고 상의하고 발표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개별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상의 안 하셨다는 거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마지막에, 기회를 혹시 주시면……

○**김의겸 위원** 권순정 기조실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25일 정보위에 오셨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예.

○**김의겸 위원** 정보위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권순정 기조실장에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통상적으로 대변인이 장관하고 공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권순정 실장은 통상적으로 장관과 상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허락 없이 나갔다는 것은 나중에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하고 상세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개별 사안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 제 입장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의하지 않았단?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저 뜻이 제 뜻이기도 하다니까요.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그랬는데 25일 당일은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개별 발언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하나를, 장관이 언론에 대응하는 것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지요.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학폭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PPT 한번 봐 주실래요? PPT 오른쪽에 보면 KBS 보도가 있습니다. KBS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18년 11월입니다. 바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배치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권순정 또 이번 인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현우 모두 다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정순신 혼자 언론에 대응했고 혼자 감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정순신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저 정도로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법무부의 관행이고 업무 준칙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규칙이 있지는 않고요. 저것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당시에 알지 못했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시지요.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것을 철회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정순신……

○**김의겸 위원** 아니지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그때서야 철회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파다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들키고 넘어갑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김의겸 위원** 그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리고 1월 18일부터 정순

신 유력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한 달 넘는 동안에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없습니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던 거고요.

○**김의겸 위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순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보도를 안 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리고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리지 않았던 것이니까 이게 확인되지 못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로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이 상황은, 이렇게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의 경우 그 이후의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있었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수 없었다,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나요?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의겸 위원**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변명으로 들리고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했던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언론의 관행이나……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김의겸 위원** 예.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대검 부대변인을 했다고, 진짜요?

○**김의겸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요.

○**위원장 김도읍** 정리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대변인 했던 것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리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단락이 났습니다.

○**김의겸 위원**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주셨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단락이 났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김의겸 위원** 구조적인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그때 왜 정순신이 답변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혼자,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 정도인데도 검찰 업무에서, 검찰 시스템에서 보도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구요.

○**위원장 김도읍** 정리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대검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 중앙지검에 근무했던 것 아닌가요?

○**김의겸 위원** 아니,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 기본적인, 법조인대관에도 나오는 경력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관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먼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관이 인사 검증의 내용에 대해서……

○**김의겸 위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제가 위원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김의겸 위원** 김도읍 위원장님, 저한테는 질문할 기회 이렇게 안 주시면서 장관에게는 왜 주십니까?

○**위원장 김도읍**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질문하셨잖아요.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 말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예결위에서 민주당께서 뭘 주장하셨다면 법무부장관이 인사정보에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라고까지 주장하셨어요. 그 말씀은 실제로도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에서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얘기했던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걸 검증해서 걸러 냈었으면 이런 일이, 본인이 다시 아픔받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제 질의 한 다음에 좀 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정말 모처럼의 현안질의가 생겼는데 누가 위원이고 누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관께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도읍 저한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 의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박범계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김의겸 위원 질문에 한 장관의 답변이 한 3배 정도 더 많아요, 정확하게 계량해 보지는 않았지만. 김승원 위원님 질문에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50 대 50이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관의 무슨 변명의 장으로서 이렇게 현안질의가 활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적절히 잘 감안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PPT 띄워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있었는데요. 장관님께서 이 결정은 존중한다, 그런데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법연구회·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이 5명의 재판관들이 뿔뿔 뿔쳐서 결국은 무효 확인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해서 게임에 졌는데 그 책임을 선수에게 물어야 되느냐, 사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오히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이 결국은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검수완박에서의 위장 탈당, 이것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다음 PPT를 좀 볼게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6개의 범죄로 결국 기소가 됐지요. 그런데 오늘 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건 위증 직후에 업자 정진상 통해서 납품청탁 해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사건,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지금 현재의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검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그 이전의 시행령에서는 위증에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증으로 인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귀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시행령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상당히 호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다음 항목을 좀 보고 여쭙볼게요.

사실 현재에서는 실질적 판단을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전혀 하지 않았습니

○전주혜 위원 위헌인지 아닌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나 고발인들이 현재에 위헌제청을 신청한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제청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실질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도 얘기를 하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됨으로서 장애인과 아동 피해, 이러한 공익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해 버리면 다룰 방법이 없잖아요. 게임이, 그냥 수사가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1소위에, 제가 그 당시에 검수완박법안의 소위에도 참여를 했고 안전조정위, 뭐 법사위도 다 참여했습니다만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가 폐지된다,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 갑자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아무런 심사도 없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위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성남FC 비자금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결국은 죽어 가던 불씨를 살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2021년 9월에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현재 같으면 그러면 끝나요, 고발인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정확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좋아요.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정순신 부실 검증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 ‘책임이 있다’, 다른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구조적 문제이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더 후퇴한 것 같은데, 책임을 느낀다보다.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좋아요.

법무부장관이니까—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만—법률적 견해를 한번 묻고 시행령 얘기를 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매국 외교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을 내린 건 아시지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김능환 대법관 판결과 그 이후의 판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범계 위원 소부에서 한 번 2012년에 내렸고 2018년에 전합체에서 내렸어요. 전합체 때는 주심 대법관이 김능환 대법관이 아니고 김소영 대법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법무부장관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박범계 위원 찰떡하게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찰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박범계 위원** 존중돼야 된다, 대통령과는 생각이 다르시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무부장관이 제일 가까우신 분인데 그래도 대통령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늘 체크를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박범계 위원** 알겠어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 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 국민의 생각과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될 뿐만 아니라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그러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삼권분립의 위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시겠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닙니다.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해 보세요. 제 의견을 들으셨어요, 방금?

○**법무부장관 한동훈** 첫째로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제가 엄히 보고 영장까지 쫓던 사람입니다.

○**박범계 위원** 알아요. 수사한 것 알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판결과 거기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만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똑같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시행령 얘기해 봅시다.

각하해서 실질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 일단 검사가 아니다. 첫째,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 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한동훈** 말씀드릴까요?

○**박범계 위원**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범계 위원** 그러세요. 한 30초만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네 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에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 의견도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되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답을, 실질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인으로서 청구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답을 듣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장관께서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법무부장관 한동훈**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은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박범계 위원**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저는 답입니다.

○**박범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장관께서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 장관 편을 들었다고 보는 네 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세 분의 재판관들이 장관은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헌법 12조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적 권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권을 위한 권능이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적법 절차의 통제자, 사법통제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를 얘기한 것이지 제가 장관 할 때……

○**법무부장관 한동훈**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장관 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남이 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고 엄히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 판결을 잘못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수 의견에 의하더라도.

○**법무부장관 한동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인권피해, 국민의 인권피해를 검찰이 리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취지가 뭐가 다른지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동문서답이에요, 여전히.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 저도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쭙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아까 질문하셨냐면, ‘검사의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더라도 이번 권한쟁의에 관련된 결정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존중하냐’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청구인적격을 부인하신 부분이니깐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존중하고 거기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입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위

원님들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대표까지도 이 결정 자체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된 결정이다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해요.

오늘 장관님도 듣다 보면 네 명의 그러니까 장관님의 편을 들어준,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재판관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반면에 다섯 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은 한다고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등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헌재 결정문에도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유사한 사전에 네 번의 결정이 있었다고 언급이 돼 있고, 제가 그 결정례들을 찾아봤더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변 출신이거나 국제법학회 출신이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7헌바196 사건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도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고, 그 이전에도 보면 검사 출신인 재판관들 그다음에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김기현 당대표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한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박주민 위원** 제 질문을, 제 질문의 핵심 먼저 답을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취지가 지금 이것은 왜 그분들이 아예 판단을 안 하고 각하했냐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구성을 했던 겁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은 민변 또는 국제법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만 그런 취지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적격의 문제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주민 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셔야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주민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것에 제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에 대한 모독 같고요.

○**박주민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제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제가 다른 질문을 하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제가 답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지요.

○**박주민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차라리 여쭙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는데요. 과거에,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 여쭙보신 것처럼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순신 변호사가.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중앙지검에 250명 있는 검사예요.

○**박주민 위원** 제 얘기 좀 듣고 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고 또 보도도 나왔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권순정 기조실장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예.

○**박주민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그때 출석하셨을 때 제가 여쭙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론보도에 검찰 관련 무슨 보도가 나오면 살펴 보냐, 사실 확인을 하냐, 이거 혹시 누구 지시가 있으면 그런 걸 하나’라고 했더니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검찰과 관련된 모든 보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진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특별히 지시가 없어도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KBS 보도를 김의겸 위원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고위 검사’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뭔가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되는, 작년에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제가 당시에는 그 보도가 났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으로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박주민 위원** 이때도 그냥 단지 권순정 기조실장님의 업무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검찰 내에는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그러니까 추측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가 그 당시는 정순신 검사 본인의 무슨 비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박주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보도 취지는 고위 검사가 아버지로서 뭔가 이 사건 진행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순정** 당시 대변인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확인을 안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대변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보도도 있었고 했지만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은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 투명화 문제는……

○**박주민 위원** 효과적으로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원인 분석되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지요. 당연히 투명화된 것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개인 송사 문제고 게다가 제가 알았더라도 제가 내용에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어느 직역에 간다고 찍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라면 개인 송사라든가 가족 문제라면 이게 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PPT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글썽요, 계속 탄핵을 작년 부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 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조수진 위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 가지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물론 존중은 해야겠습니다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판단은 제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면 저해하고 있다 이런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유사하게 위장 탈당 등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도 내년 4월까지의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조수진 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장 탈당을 하든 온갖 꼼수와 편법을 쓰더라도 내년 4월까지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는 더 가열될 것이다 이 점이 참 가슴 아픕니다.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이라는 논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

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 별도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학교폭력은 중대범죄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범죄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과거에는 전학조치가 4명이나 이루어진 학폭 가담자가 무난하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장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알지 못합니다.

○**조수진 위원** 더구나 해당 사실은 장관후보자로 청문회 10년 전에 특강에서 서클을 만들어서 복수했다고 해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조수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더 큰 책임감을 가져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명심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다시 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장관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 이게 장관의 책무라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일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 직무유기지요.

헌재는 국회법과 헌법상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김수완박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회법은 절차에 관한 법이고 절차가 핵심인데 절차의 핵심을 어겼는데 유효하다 그 결론을 상식적인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조수진 위원** 절차를 위배한 것은 결론적으로 옳다 이렇게 된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인정해야겠네요, 이런 논리라면?

○**법무부장관 한동훈** 공감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공감하기 어려운 논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위장 탈당 등 입법 과정에 동원된 편법, 꼼수를 하나하나 거론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이 위법이 모두 인정됐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을 용인해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국민들께서 열패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정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위장 탈당에서부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면 이 법에 대해서 스스로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미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저희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법과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이 정당하다, 이것을 최고 사법기관이 내놨습니다. 또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퇴와 탄핵 사유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로남불은 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이탄희 위원** 알고 계시면 좀 이상할 뻔했습니다.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인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 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마 전까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런 지적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탄희 위원** 그러면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걸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국회에 그 적절한 냉각기가 1년 이다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 부처 의견이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것은 내겠지요. 저는 그런 법안이라는 건 알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게 지금 발의된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의견 좀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고요. 이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제 법정기한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처음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현재 결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현재 결정 취지대로 행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탄희 위원** 정확하게 현재 결정 취지대로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탄희 위원** 그 행정에는 시행령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그 현재의 결정이 시행령과 서로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위원** 현재 결정 정보 혹시 수령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다시 한번……

○**이탄희 위원** 헌법재판소 결정 정보 수령하셨어요, 청구인이시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결정문 말씀이신가요?

○**이탄희 위원** 예.

○**법무부장관 한동훈** 결정문 봤습니다.

○**이탄희 위원** 결정문 수령하셨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정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탄희 위원** 결정문 자체요, 재판관들이 서명한 결정문. 판결문.

○**법무부장관 한동훈** 판결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탄희 위원** 못 받으셨지요. 그 결정문 수령을 하시고 나면, 그 결정문 아직도 지금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인사 검증 문제입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28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시면서 장관님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낙마 직후에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 좀 개선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인한테 묻고 하는 절차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거든요, 질문을 보내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질문지를 보완하고 그리고 본인의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판결문이라든가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탄희 위원** 개인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지만 판결문 같은 걸 확보하거나 할 때는 그리고 학적부를 확인하거나 할 때는 그냥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내주는 않거든요, 학적부 내용 자체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적들을 그대로 받아 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개인정보 동의서 받으시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통령실에서 받아서 그 자료를 징구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이탄희 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이탄희 위원** 정순신 후보자 관련해서는 장관님 혹시 이 판결문 보셨습니까? 이게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년 9월 4일 자 판결인데요. 지금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전문을 보지는 못 했고요.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 판결문에 지금 인사정보 관련해서 접근을 못 했던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알지 못했습니다.

○**이탄희 위원** 확인을 못 했던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 법원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이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주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탄희 위원** 요구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과거에 이런 것은 여러 차례 했었지요.

○**이탄희 위원**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요구한 적이 없지요, 아예?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 건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요청하는 절차 자체를 했는데 안 됐던 경우는 과거에 이미 쌓인 전례입니다.

○**이탄희 위원** 그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장관님 본업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법원행정처에다가 그 부분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탄희 위원 대통령실도 좋고 다 좋은데요, 장관님 본업이에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도 당연히 그 신상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인사정보관리단을 지휘·감독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하시는 것은 장관님 본업이에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말씀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리고 한 달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개선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나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내 주시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분야 1·2위로 인사 검증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 고치라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 거예요. 본업에 충실하는 법무부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편람이요, 업무편람 왜 계속 공개 안 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그것은 노하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됩니다.

○이탄희 위원 보세요. 그 노하우에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장관님이 두 번이나 이미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 말을 잠시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탄희 위원 이것은 작년 7월 28일 자, 8월 29일 자 제 차례 국회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고 했지 그 자료를, 제 취지가 이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이탄희 위원 그 설명 자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그 질문서를 아마 홈페이지 바로 공개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탄희 위원 장관님이 저희한테, 국회에 주신 적이 없고……

자, 이 문제는 핵심이 이겁니다. 스스로 개선책을 찾으시는 것도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노하우가 담겨 있는 업무편람을 공개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투명성 제고라고 말씀하셨던 장관님 말씀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이건 그냥 어차피…… 저희가 건설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검증이라는 문제가 강도를 무한히 높이면 사찰이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이탄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판결은 대법원 인터넷검색시스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문 자체가.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정리합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저희가……

○이탄희 위원 이것 보셨으면 아마 검증에서 반대하셨을 거예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저 이슈가 있었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이탄희 위원 여기에 정순신 후보자 이름도 실명으로 나옵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았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탄희 위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책 찾읍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장관,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인상깊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리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국민의 인권보호,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들…… 그와 관련해서 참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무직 공무원하고 정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역시 현재의 결정에 근거해서.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하실 수 없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책임 여부를 물으니까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장관의 보좌기관으로서 인사검증관리단을 설치하고 또 청와대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무부에 두는 게 맞냐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묻고 저를 질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강욱 위원**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질타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그래서 안 돼요. 잘 기억하겠지만 과거에 저기 철책선이 뚫려 가지고 누가 월북하거나 월남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병사들이 실수를 하는데 사단장이 보직해임 당합니다. 그때 사단장이 언론에 나서 가지고 ‘책임감은 느낍니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지휘관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고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의 보좌기관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을 운영하고 저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왜 현재 결정의 효력을 지금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한명숙 총리 사건 재판

효력도 부인하시던 분들이,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명숙 총리 사건 소수의견에 담겨 있는 그 검찰 수사의 위법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더 나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무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국민에게 확인하게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거둬들인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현 대통령과 외교 정책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그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벌였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로서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것이라든가 걸 지적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균형이 맞는 것이지요. ‘소수의견에 네 사람이나 되는 분이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한명숙 총리 소수의견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얘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 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순진 실명을 검색해도 판결정보검색시스템에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고 거기에 A씨라고 했건 ㄱ씨라고 했건 누구나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통상 법무부와 대검의 관행상 대변인실은 그런 보도가 있으면 그게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를 알려드릴까요? 2020년 봄에 문제가 됐던 부산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부 대변인 권순정,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세 사람의 단독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대변인 하면 기억하지요, 권순정 실장? 대변인이 왜 여기 끼어 있느냐 얘기하니까 ‘대변인은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독방에 포함돼 있었다’, 그때 보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한 자도 안

나왔어요,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지.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독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도대체 현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고, 위증, 강패, 마약 왜 수사 못 하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강패나 마약수사는 인지수사가 없습니다. 검찰이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통계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무고,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없이 전부다 인지를 검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판결 검색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안 해 왔던 거지요. 안경환 후보자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문 검색을 청와대가 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독방의 예를 얘기하고 보도된 사실을 확인한 것을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도읍 정리해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 건건만, 말만 있으면, 입만 열면 프레임 전환하려고 그러고 아주 잘못된 버릇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을 조금 삼가 주십시오. 여기서……

○최강욱 위원 누가 말을 삼가야 되는지 장관한테 좀 지적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게 아니고 버릇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강욱 위원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은 법무부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또 반말할 겁니까?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김도읍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도읍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재단을 하지 마세요.

○최강욱 위원 여태까지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김도읍 자, 권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때 비동의 간음죄 논의에서 사용하신 근거와 팩트가 저와 많이 달랐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 독일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권인숙 위원 회의가 끝나고 법무부 담당자가 근거 자료를 가져왔고 장관께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면 여러 번 깊은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만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권인숙 위원 아닙니다.

장관은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당시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이 90%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독일 유죄율은 8%였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간음죄

논의가 절실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두 통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미 한 번 팩트가 틀렸다고 1차 질의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질의에서 장관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가 맞다고 우기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속기록입니다. 보시면 통계를 확인하고 틀리지는 않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대로 확인하고 답하신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인숙 위원** 스웨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스웨덴은 정확하지요.

○**권인숙 위원** 스웨덴 부분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권인숙 위원** 왜냐하면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랐으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권인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와서 법무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스웨덴 23%는 그대로 통계에 나와 있는 거고……

○**권인숙 위원** 아이, 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독일의 경우에는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여기 보시지요. 이 속기록만 봐도, 지난 회의 끝나고 그때 독일 관련해서 팩트 체크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가 말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스웨덴·한국의 기소 대비 유죄율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요. 독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제가 약간, 의회에서 장관이 비동간 도입 당시에 발언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소 대비로 69%입니다. 역시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큰 경향에서 한국보다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8%하고 70%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라서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었고 법무부에서도 와서 확인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통계를 내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권인숙 위원** 또 여전히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팩트가 틀렸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논지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동의 간음이라는 것은 민감한 문제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섬세하게 준비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틀린 팩트는 가져오지 마셨어야지요.

장관이 국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조건 맞다고 우기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장관님의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아직 확인이 덜 되었다, 살펴보겠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바로잡을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를 얘기할 때 각각의 국가마다 내는 통계의 기준이 다 다르고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권인숙 위원** 통계 기준은 다 다르지요. 당연히 다른데……

○**법무부장관 한동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권인숙 위원** 8%와 90%는 완전히 잘못된, 그것은 현실을 오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저는 장관……

○**권인숙 위원** 알았습니다. 여전히 저것을 인정 안 하시는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알았다고 하시면, 말씀만 하시고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권인숙 위원** 아니아니요, 법무부에서 와서도 자기네 통계가, 근거를 잘못 봤다라고 사과를 한 사실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이 통계가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권인숙 위원 아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우리 차이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인정 안 하면서 스웨덴 것을 갑자기 갖다 놓으시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스웨덴 것 정확하잖아요.

○권인숙 위원 아니요, 틀렸습니다. 스웨덴은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그 기준은, 어차피 그 통계는 스웨덴에 없어요.

○권인숙 위원 스웨덴은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전제였고요. 법무부에서 와서도……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그것은 사람마다 여러 차례 피해 당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권인숙 위원 그렇지요. 스웨덴은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러면 문제는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그게 그렇게……

○권인숙 위원 알았습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것 좀 묻지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계속 진행하면서 헌법재판소 판정이, 지난 23일 장관 및 검사 6인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게 세상 일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로 물을 수준이면 쉽지요.

○권인숙 위원 이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중요한 것은 위장 탈당으로 인한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권인숙 위원 장관 및 검사 6인이 청구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아요?

○권인숙 위원 권한쟁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는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위법하고 위헌적인 입법이 있었는데 절차와 내용의 위법 문제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해서 판단하지 않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지요.

○권인숙 위원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장관이 이런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장관이 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권인숙 위원 제가 작년 8월부터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장관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었는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하면 안 되나요?

○권인숙 위원 잠깐만 좀 들어 보시지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 보시지요.

저는 이게, 현재가 여러 번 수사권은 입법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적·갈등적 저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여서 공직자의 책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무부장관이라면, 공직자라면 법률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따라 나가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 자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장관의 권한쟁의와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도읍 자, 정리해 주시지요.

○권인숙 위원 이러실 거면 그냥 정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장 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장관이 이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안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간 협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리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헌법에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의해서 그게 전제가 될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지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히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언론에 한 말을 보면 이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법에 기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무효화될 이유가 없다라는 멘트를 언론에다 한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이겁니다. ‘절차상으로는 위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안은 유효하다’입

니다.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의 위법은 있었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10년, 20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형사법도 그렇고 민사법도 그렇고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면, 절차적인 위법·부당함이 있다면 결론도 잘못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어요. 그것이 사법 발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97년, 2009년 그 판결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입법 절차의 하자가, 지금쯤에는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도 법률로 유효하지 못하다’ 이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추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용에 관한 것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각 하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오히려 좀 궁금하고요.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헌법적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내리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미선 재판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선 재판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조정위에서 일련의 의사 절차가 다 생략됐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여기의 안전조정위 표결은 국회법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다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사위 1소위에서 축조심사와 토론 절차가 진행됐

기 때문에 이 법안심사 과정 전체에서 심의·표결권 행사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법률을 공포하고 효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소위원회회의 또 안전조정이면 안전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다시 또 본회의 가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토론할 기회를 줬다면 전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될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도 이게 다수당이기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께서 하고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 헌법재판소 판결례에 따라서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군데만 토론할 수 있는, 자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 유효하게 된다. 어떤 다수당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선 재판관의 결론은 예전의 결론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국회가 발전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소수자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배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내심의 불만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선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헌재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수 의견으로?

○**권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법에 보면 무슨 수인 가능한 절차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지요.

○**권철승 위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참, 이런 경우가 어떤 건지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법으로 다 규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마 법에 그런 개념을 도입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장 탈당이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철승 위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지요.

2009년도에 미디어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조인이니까 제가 알고 있지요.

○**권철승 위원** 제가 그때 그 미디어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이 통과되는 날 본회의장 2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시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설명해 주시면 잘 들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정말 난투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투극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권철승 위원** 물건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야가 심각하게 격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과.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지요, 그랬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권철승 위원** 제가 지금 맞나 틀리나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십몇 년이 지나고도 헌법재판소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선거법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아시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 들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 유명한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법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있던 날, 그 법이 통과되던 날 아마 국회에서는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집단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다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사실은 똑같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이 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장 탈당 해서 위법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지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게 맞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지금 드린 게 답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지요. 동문서답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기존 입장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판단의 문제인데 그걸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닙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과거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랬다, 이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철승 위원** 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그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듣기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권철승 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 지금 답변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게 답변이지요.

○**권철승 위원**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말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권철승 위원** 저는 원하는 답변이 없습니다.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유지해 왔던 법 판결의 방식을 그대로 이번에 유지했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는 따로 따져 봅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기존에 위장 탈당에 대한 판단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같은 사안입니까?

○**권철승 위원** 패스트트랙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읽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읽어 봐 주시면 제가 들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것 너무 길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읽습니까? 따로 읽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결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사권과 소추권은 법률상 권리이고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봤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다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공수처 때 비슷한 위당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철승 위원** 그때 비슷한 위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입법기관은 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

는 최종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그 판단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본인의 동의 여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국민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판단이 많은 국민들의 판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권철승 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권철승 위원** 불복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철승 위원** 지금은 또 대답이 다르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 대답이 정확하게 같은데요?

○**권철승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법무부장관 한동훈**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그러면 공감해야 하나요, 이 내용에?

○**권철승 위원** 국무위원은 집행자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러니까 이 법에 맞춰서 취지에 맞춰서 제가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권철승 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강패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달려들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그 시행령은 적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묻는 겁니다.

○**권철승 위원** 말 좀 합시다.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웃음소리)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답을 들으러 오신 것 아니가요?

○**권철승 위원** 저 질문하는데 저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야기 다 하고……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유상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현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낚시는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온라인에 이것은 재판소에 대한 조금의 존중도 없이 완전히 조롱이거든요. 이 정도로 현재 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 현재 결정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철승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난투극이 벌어지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던 동물국회의 모습을……

소수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하면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소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가져 가자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보다도 훨씬 후퇴한 현재 결정이 나와서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 절차상의 하자 부분, 사실은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옆에 계신 전주혜 위원도 있었고 김남국 위원도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 지켜봤지요, 안전조정위원회에서의 난장판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난장판.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었고 어떠한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도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당시에 법안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법안이 안전조정위에 올라가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안전조정위에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정위의 수정안을 가지고 안전조정위를 열었고 그것을 바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안전조정위에서 수정된 법안을 가결했는데 다음 날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갔어요. 결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현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안의 상정 절차 자체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헌재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의 국회 입법자들의 노력, 정신을 감안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재가 새로운 입장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다수당의 입법 횡포는 반복될 것이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날치기하면서 서로 간에 그걸 통과시키는 다수당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니까. 무슨 유행가 노래도 아니고 헌재 결정은 절차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식적인 사회라면 그 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정당했느냐의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안전조정위 또 법사위에서의 어떠한 심의 의결도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 법상식이나 일반 법률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적 흠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회법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법은 전적으로 절차법입니다. 절차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결을 인정하고도 유효하다? 저는 오히려 이게 실체법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완전한 절차법에서 절차의 흠결을 인정하고도 유효하다는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나 국민들이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 민주당의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자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복당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서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소위 말하는 사실상 자백이지요? 위장 탈당을 했음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력히 부인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서 복당을 해 줘야 된다

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위장 탈당을 자백하는데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민형배 위원께서는, 이 재판에 나온 근거를 보면 위장 탈당이 전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라고 해서 등가성을 다 갖춘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시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취지의 면에서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결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게다가 이 헌법 소송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오케이.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도읍**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모

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령의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건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진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꿈수, 소위 말해서 꿈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의 판결은 검찰독제,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순신 국가분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답변을……

○김남국 위원 아니요.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을……

○김남국 위원 그것 충분하게 들었으니까요, 또 반복되니까 시간을 절약하자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요, 반복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남국 위원 아니, 절약을 하시자고요. 절약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인사 검증과 관련되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까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김남국 위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김남국 위원 여섯 번째 낙마입니다, 여섯 번째 낙마.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런데……

○김남국 위원 여섯 번째 낙마.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가 이렇게 인사 참패와 인사 실패를 겪고도 계속해서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밀주의,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공을 하면서 함께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짚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인사 검증 저희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김남국 위원 아니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동안에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한 것 한 번도 없었어요.

○김남국 위원 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굉장하……

○김남국 위원 장관님, 책임 표명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 한동훈 누가 책임을 표명했어요?

○김남국 위원 아니, 전 정부든 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안 했어요.

○김남국 위원 유감 표명을 하고 책임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런 적이 없는데요.

○김남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장관님,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되어서 잘됐는지 그리고 책임을 물어보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보관리나 업무편람 공개 안 하지요? 검증 대상 공개 안 하지요? 검증 과정, 결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얼마나 소요됐는지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에는 인사추천 단계부터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는 인사검증단 업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인사 검증 2차 업무,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검사들이 포진해 있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밥그릇 챙겨 주고 싶은 검사들에게 자리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인사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님께서 인사 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모든 것을 다 ‘검찰왕국’ 이렇게 하니깐 말씀이 좀 무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내용에 관해 이 시행령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현재 공보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위원** 장관님,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 답변이니까요.

○**김남국 위원** 감사하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뒷부분 제가 답변드리려고 해요.

○**김남국 위원** 아니, 아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

○**김남국 위원** 권철승 위원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습니다? 지금 말이 많다고 하셔서 가지고, 말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지금 인사 검증에 대한……

○**김남국 위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답을 안 듣고……

○**김남국 위원** 답은 위원장님한테 구해 가지고 하시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이랑 두 분 하시니까.

경기도 도청,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도청에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검사들이 상주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원래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청의 요청에 따라서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며칠이나, 압수수색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아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것은 포렌식 때문이에요, 그쪽의 협조 정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검찰수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김남국 위원** 압수수색 기간이 무려 23일, 22일……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예 4층에 상주해 가지고 PC 92대 그리고 11개 캐비닛 열고 6만 3824건의 문서를 가져갔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숫자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의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보실까요?

○**김남국 위원** 장관님, 이것을 압수수색이 적다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 변명 아니에요.

○**김남국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비되고 그리고 얼마나 지장을 초래할지, 그 압수수색과 관련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인권침해 이런 것들을 법무부장관이 통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마무리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적격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시행령을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공보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검증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인사 검증이라는 게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져 나왔을 때 언론의 검증을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한 말씀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거

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도를, 아주 무턱대고 높이면 이 건 사찰이라든가 어떤 자료, 정치적 정보 수집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제하는 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안점을 만든 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절차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인사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제가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괜찮으시면?

○위원장 김도읍 예,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렇게 됩니다.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한 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에 여러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양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한테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의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동의한다는 내용, 가족들까지 같이 해서 보내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응하지 않으면 인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항목대로 해 오고,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받은 인사 검증의 설문지 그리고 동의서를 저희 인사검증단에 검증해 보라,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넘기면 저희는 그것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임명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 상태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의 동의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 내에서만, 이 항목들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경찰 세평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혹시라도 저희가 하는 객관적 검증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문이라는 것을 들어 보는 것이지요. 그런 세평조사를 하는데 이 세평조사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대통령실로 가는 겁니다. 저희 업무는 끝난 상태이

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자료들을 모아서 대통령실에서 2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걸 주게 되면 후보자들이 보고 미리 대비하거나 어떻게 보면 시험공부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노하우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 중에서도……

○김남국 위원 나중에 인사 검증한 결과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정보는……

○법무부장관 한동훈 아니지요.

○김남국 위원 결과는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게다가 후보자 중에서…… 위원님, 후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명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정보가 다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확인 후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개인정보는 폐기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도읍 장관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김남국 위원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겠다는,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금 전에 장관께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매뉴얼 그게 조금 전에 이탄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사 검증 관리 관련한 업무편람 그 부분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조정훈 위원님이 안 계시나?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장관님, 오늘의 논제는 거의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된 부분하고 헌법재판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자녀의 학폭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임명을 철회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소위 자녀의 학폭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2018년 당시에?

○**법무부장관 한동훈** 전혀 몰랐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다른 언론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저희가 알고도 감수하고 밀어붙인 것이라면 10시간 만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철회하시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KBS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위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언급을 했을 뿐이고 도대체 고위 검사가 누구인지, 소속 청이 어디인지라는 것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 후속보도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이것 난 이후에 혹시라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사정보에 그런 것 적힌 게 있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아버지 위주로 돌아갔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보도들이, 다른 데서 따라붙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게 파다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결과론인 것 같고요.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본인의 문제였다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검사 개인의 비리에 관한 문제였다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지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250명이나 되는 중앙지검 검사, 그중에서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알 수 없었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알았으면 인사 검증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본인의 문제가 그러하였다면 당시에 꼭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삼았을 겁니다. 당시에 본인의 문제로 집중된 보도가 아니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2018년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이게 본인의 문제였다면 감찰관한테 조사를 지시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였다면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문제를 법무부에 조사 요청을 했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아무런 조사 요청이나 조사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자료에도 그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운 구조지만, 다시 말씀 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최강욱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이미 1월 18일 날 조선일보에서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등으로 해 가지고 1월 말 경에 이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한 3명 중에 1명이라는 게 보도가 되고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임명 발표가 나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유력 보도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한 달간 보도 이후에, 지원 이후에 임명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인사는 그냥 통상의 인사랑 달리 경찰청에서 공모를 통해 진행됐고 개별 면접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경찰 세평조사 당연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경찰의 세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경찰에서는 검사 출신의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PPT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인 정권에서도 인사 검증 주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언급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경우에도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 논란으로 자진사퇴를 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알 수 없는 데다 판결문을 청와대가 본다’는 식으로 그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언급을 했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2018년 4월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증 설문에 해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목이 없어서 김 원장도 신고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개선 절차를 계속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한 것은 오히려 강도 높게 해서 정보를 많이 축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주였거든요. 법무부장관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높였을 때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적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강도를 낮췄을 때 그물이 성겨지는 점, 이런 양면성이 있는 분야, 영역이 저는 인사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간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 다만 이런 부분, 과거에도

보면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이후에 쌀 직불금 관련한 검증이 촛촛해졌거든요. 이후로는 학폭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더 촛촛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1분만 드리세요.

○**최강욱 위원** 질의하시는 중에 뜬금없이 동료위원의 이름을 허위사실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게 물의가 빚어졌고 사실로 확인됐으면 대검·법무부 감찰은 물론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가만히 놔뒀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발 좀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측근비리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다 없앤 정부에 소속돼 있는 당의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 비서실·경호실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업무를 하는 것은 반부패비서관이에요. 그 잘난 검찰출신, 특감반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라서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순신 검사 27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대검 검사급 검사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게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그렇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차분하게.

○**기동민 위원** 법사위원장님께서 차분하게 질의하라니까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세상과 많이 소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챗GPT 관련해서 어떻게 법무행정에 활용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물어 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구상과 접속 이런 부분들 주시길래 막힌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제 느낌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 놓고 세상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명심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단락만 가지고 정당성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보관과 이름이 같으세요, 김동훈 공보관이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그것은 모르고요, 보도만 봤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김동훈 공보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행령 관련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현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계자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김동훈 공보관 드림’ 하고 편지를 하나 쓰셨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 이해하고 똑같은데요.

○**기동민 위원**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입장에서는 장관님의 말씀에 본인의 견해가 편파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발끈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라는 직책, 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사려 있게 판단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쪽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순진 전 검사에 대한 이력을 얘기하면서 ‘대검찰청 부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책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누구를 거론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직책은 없습니다’라고 몇 분 정도가 딱 짚어서 말씀 주셨어요. 저는 비법조인이라서 우리 당 동료가 작은 팩트에 대해 실수했나 해서 얼른 언론 검색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직제가 있더라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직제가 있지는 않고요. 연구관, 지금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고 아마 그게 인사정보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일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작은 사실인데 예단하고 단언해서 말씀 주시는 분위기라는 것이지요.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비법조인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열려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통통 튕겨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인사 검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 주셨지요? 구조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장관님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인사검증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추천하는 단위, 인사를 검증하는 단위 또 최종 결정하는 단위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까지 전부 다 검사 일색으로 짜여져 있어요.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언론이 알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사 검증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한 여론조사를 보면 75%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맨 첫 번째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님께서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본인이 소상하게 밝히지 않으면 개인, 이 정부와 맞물려서 어려운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국민들이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정치적 책임입니까? 정치적 주장입니까? 국민들로서는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정순신 사태를 통해서 봤듯이 경찰청장…… 모든 인사검증시스템 전부 다 법무부에게 있었다라고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장관께서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그것 되게 맞는 얘기면서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당선된 지 1년이 지났고요,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년이 다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습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적어도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인 각별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좀 더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인사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엄중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구조적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소상히 상황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중에서 제가 듣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한마디 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사과하신다는 말씀은 한번도 안 하셨지요. 이런 정도가 되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인사 검증

의 1차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시스템하에서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자체의 본질상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진일보한 표현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저도 시간 넣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지만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공식 입장은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를 하여야 한다 또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여야 한다…… 그러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 는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 검수완박법이 작년 4월 27일 날 안전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에 통과된 법과 다릅니다. 그런데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는 더 엄청난 사건이 생겼지요. 뭐냐? 형사소송법에서 이의신청권을 갑자기 폐기해 버립니다.

장관님, 국민들께서 억울한 일이 있다, 불법이라고 확인했을 때 의지하는 데가 법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정작 고발을 했는데 사건 수사가 엉터리다, 이의

제기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렇게 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수사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게 누구를 견제 효과가 없거든요. 누가 리뷰되지 않는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이런 걸 떠나서 리뷰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 이유로 그동안에 검찰이 리뷰하도록 해 놓은 것인데 그 과정을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없앤 것이고 그 피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고발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에게 집중돼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한 리뷰 절차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위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가 위헌이라는 점에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법률가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그런데 꿈수 탈당 이든 갖은 꿈수, 탈당을 저지르고 이렇게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이러한 법에 대해서 이 법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수사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이 법을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한 거예요. 맞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신해서 헌법소송을 한 것인데 헌법소송 해서 차라리 이게 맞다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 판단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한다면,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헌법적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답을 들어야 할지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법에 호소를 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꿈수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유효하다라고 헌재가 인정을 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

재판소이고 여기에 동참한 재판관들은 분명히,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다. 아마 법률가로서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 하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4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월 2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3)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기관의 사업에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탁기업은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투자비용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기존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으로 보되 일부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정의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한 조합을 포함하고, 신설되는 규정들이 현행법의 어떤 조항의 특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및 투자자의무와 관련하여 검사,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3조의2에 대해서는 검사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검사, 등록취소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은 가맹점의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갱신 간주일이 특정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유효기간의 적용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법 시행일을 등록갱신 간주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조주현 차관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번 상생법 관련인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기술 유용에 관해서는 특허권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왔는데, 크게 보면 조정제도를 활용한 방식 또 그다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다음에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제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법원에다가 피해를 봤거나 또 예상이 되는 경우에 금지 혹은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보면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도입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가처분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생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담보 제공 같은 것이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될 여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승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럴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위탁·수탁 관계 거래 형태가 하도급 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구제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면 범위가 넓은 위수탁 관계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하도급 같은 것에 먼저 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 보니까 정무위원회의 하도급법에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로 봐서는 하도급법에 먼저 적용을 해서 상황을 보면서 위수탁으로 옮겨 가는 게 조금 더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소한 동시 시행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생법에 적용을 해서 위수탁 관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경제에 좀 쇼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든 2소위에 넘기든 그것은 제가 전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저는 18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동민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 의견을 일단 좀 분명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효성에도 의문이 좀 듭니다. 특히 지분이 많지 않은 소액주주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겠지요. 그리고 무능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가 돼서 M&A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고 또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효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다는 걸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처리 결과,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박주민 위원 처리 결과는 아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조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유상범 위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성장하는 기업이 기업 사냥꾼이나 이러한 어떤 외생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기업의 건정성을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의 일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을 준비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기업 사냥꾼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든 유능한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될 때는 투자할 때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계의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 대로 물론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다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가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결국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촉진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이 제도가 그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지금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강한 편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매우 높고요. 관련 업계에서 이미 한 번 성명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국가 같은 경우에,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나라에서는 많이 광범위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해외 국가 중에,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국가 중에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게, 미국은 당연히 있는 걸로, 이스라엘이

나 이런 나라들도 이런 게 많이 도입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습니다. 영국·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 중국·인도 그다음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이미 도입을 했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상법 위원 이게 주주 평등권의 위반이다라는 지적, 이 부분은 일반 원칙에 대한 지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조 차관님께서도 굉장히 확신을 하고 계신 듯한 입장인데, 어떠신가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이미 우리 상법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인정하면서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경영주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절대다수인 4분의 3이 인정할 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쁜 경우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벤처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냉각이다 하는 어려움, 우려들이 제기될 때는 이러한 면에서 국가가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법 위원 제16항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걸 제가 그 전에 알던 거랑은 조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데. 이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 동의는,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세요.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제도가 어느 점에서 특별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동안에 벤처 투자를 이끌어 온 것은 정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태펀드라는 걸 조성하고 여기서 벤처캐피털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점점 민간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모태펀드가 벤처캐피털한테 펀드를 대여해 주더라도 민간에서 이걸 유치해서 맞춰야만이 펀드가 구성이 되는데 민간에서의 역할을 끌어들이는 데, 투자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민간 모펀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이미 민간 모펀드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영국·프랑스 등도 이걸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법 위원 이미 선진 각국이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상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조주현 차관님, 저도 16항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투자금을 모집해서 상당히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맞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망하는 기업도 있을 테지만, 또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혹시 그러면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펀드와 다르게 이걸 완전히 민간의 이익을 위한, 투자의 이익을 위한 펀드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사냥이라든가 좀 악용될 소지, 경영권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어책이랄까요 그런 거는 또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일단은 벤처투자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에서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승원 위원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실제로 18항에서 논의하고 있는 복수의결권 같은 것들이 이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18항 같은 것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미래에 있는 리스크들이 더 크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라든지 전략적 투자자들이 이걸 합해서 이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사가 일치할 때 이러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어떤 기업 사냥을 우려하기 보다는 이런 민간 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역할은 저도 보이는데 만약에 성공한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 사냥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경영권 간섭이라든가,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금 및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합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차관님도 국가에서 어떤 관리 필요성이랄까요, 감독 필요성 이런 것은 혹시 구상하고 계시나 그걸 여쭙본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민간벤처……

○**김승원 위원** 아직은 없는 거라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아닙니다. 민간 모펀드도 벤처투자조합의 일종으로서 중기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김승원 위원** 아, 그것도 관리·감독이 다 있고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보고에 대한 조항과 조사에 대한 조항들 그다음에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조항들을 다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금 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취소라든가 검사 혹은 과태료 관련 규정 적용이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저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지 그 조항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벤처투자조합에 의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고·감시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받게 원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들은 그런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좀 더 조문에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등록·취소·검사·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반영이 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도 18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질의를 드려서 쟁점 사항을 말씀드렸고 비록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주셨고, 보시는 대로 꼼꼼히 페이지 페이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중기벤처부장관님과 제가 대면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반대 이유 그리고 득보다 실이 클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수의결권이 없으면 창업자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60%, 70%, 어떤 분은 90%라고도 하는데—정부의 모태펀드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활용한다고 하면 정부의 모태 기업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활용하는 벤처캐피털은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의결권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세금을 운용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한 도덕적 해이와 또 벤처 버블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업주가 경영권 보호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장 3년 후에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생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와서 실은 벤처업계에서는 이 법 통과하나마나다, 왜냐하면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2%도 안 된다 이런 비난 많이 들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주장하기를 이분들이 상장하게 되면 일몰 조항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전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압도적인, 이론적으로는 지금 거의 13%에서 87%까지, 한 육칠십%의 지분율이 바뀌는 것을 이런 준비 기간 동안에 전환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기업들은 일몰 조항의 연장 또는 일몰 조항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벤처 복수의결권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유, 중기부도 동의하셨지만, 순 좋은 의미의 벤처의 확장과 함께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런 제한 조항들을? 그러면 결국은 이 일몰 조항도 저는 현실적으로 그때가 다가오면 일몰 조항 삭제 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사례, 외국 사례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좀 더 솔직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을 보면 우리 사례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는 우리 법안처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은 이미 유니콘이 된 기업들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닌 나라 하나만 대 보십시오. 제가 통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비상장 단계의……

○조정훈 위원 아닌 나라 하나만 대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비상장 단계의 벤처기업……

○조정훈 위원 아닌 나라 하나만 대 보십시오. 나라 이름을 대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이미 비상장 단계의 벤처기업들한테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런 나라를 한번 대시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꼭 상장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명단도. 뒤의 보좌진들 나라 이름 하나 대 보세요. 나라 이름도 못 대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얘기가 맞다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유니콘이 된 나라들 상장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을 상정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유니콘이 되기도 전에 이것 허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적 상황에서 상장회사나 재벌 비상장회사에 복수의결권 주시기로 허용하면요 저는 세습에 악

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상법상 1주 1의결권 훼손, 이 문제도 자료에서 현재 판례에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도 이미 있다고. 맞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 사용해서요 벤처 하시는 분들이, 창업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경영권 방어할 수 있고요. 비상장의 경우는 사적 계약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런 여러 제도들이 보완돼 있는데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걸 또 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내 주신 자료에서, 장관님과의 대화에서 제 의견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고요. 한번 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논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역할, 민간이 아닌 모태펀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 여기 의존하게 될 것이다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을 키우는 데는 VC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재무적 투자자라 부릅니다—전략적인 다른 그룹에서의 투자자도 필요하고 또 창업주의 지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소액주주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상장 이전의 벤처기업에는 이런 일반 소액주주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곳들이 적절한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벤처기업의 성장 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태펀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장 3년 후 내지는 상장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일각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부분이 상장 기업들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였습니다. 따라서 일몰 조항을 두고 이것을 제한적으로 지금 행사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면 일몰 조항도 역시 그 법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외국보다는 매우 좁아진 형태이지만, 상장 후 3년 이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 형태지만 일단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외국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세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벤처기업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수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상속이 되는 순간 1주 1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되는 순간. 따라서 세습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재벌 이삼 세에 의한 편법 증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악용 또 우려 의견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대기업 집단을 분류할 때는 특수관계에 의한 기업 집단을 전부 다 대기업 집단으로, 그런 기업들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한 악용 사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차관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조정훈 위원 저는 전혀 제 질문의 저 답변에 설득이 되지 않고요.

○위원장 김도읍 저는 설득이 잘 되는데?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모태펀드가 벤처생태계의 자금 제공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태펀드가 벤처 파이낸싱의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들이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지금 현재 절반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민간 자본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안에 모태펀드를 받은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넣으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모태펀드 받을 기업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이미 모태펀드가 직접적으로 투자받은 기업들의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 아니고요 벤처캐피털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벤처캐피털들이 민간의 자격으로서 그것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그 또한 민간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오히려 정부가 지원한 정책들에 대해서 효과를 제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거야 민간에서의 얘기고요. 세금을 사용하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세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모태펀드는 보조금이 아닌 거지요? 모태펀드는 투자펀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수익률을 내셔야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수익을 내야 됩니다.

○조정훈 위원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익을 내기 위한 경영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펀드에 있어서 본인들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 경영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경영자 교체, 당연한 행위지요? 모태펀드가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건 책임 위반입니다. 국가보조금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가 벤처캐피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조정훈 위원 이 논의 갖고 제가 계속할 생각은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없어서 벤처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담론이 저는 설득이 안 돼요.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저도 18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판단의 근거가 필요해서.

지금 조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들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전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업 공개 전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냥 상장하면 지분이 희석되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 안 하고 처음부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일단 그 얘기부터 해 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하는 거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일단은 미국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상장기업이 된 후에도 복수의 결권을 유지합니다. 다만 상장기업이 된 후에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그 의결권의 10배까지라는 제한을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을 언제 쓰는 것이 적정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비대면회의 때 많이 쓰는 줌(Zoom)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복수의결권 발행이 16년 1월, 그다음에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이 성공한 것은 17년 1월이었는데 사실상 상장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년 3월이 됩니다. 반드시 상장을 직접적인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장 이후에는 복수의결권을 10배까지만, 그 이상 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도입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 이후에 일정한 제한을 붙이되 나중에 필요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관한 논의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고 그때 일몰제에 걸리게 되면 그때 가서 제도 개선 또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미국이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일본은 빠지는 건가요? 일본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일본은 단원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원제라고 해서 결국 운용은 차등의결권이고 복수의결권처럼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사실상 복수의결권처럼 운용하고

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제도의 명칭만 다를 뿐이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의결권 제한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의결권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강욱 위원 일본 제도는 기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제한 제도하고 더 유사한 것 아니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사실상 차등의결권 제도를 저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눠서 오히려 복수의결권과 같은 효과를,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여기는 몇 주, 여기는 몇 주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또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당 몇 주라는 그런 개념은, 몇 개의 의결권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수의결권의 효과를 내도록 해서 같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굳이 아까 예를 들 때 일본을 빼시는 이유는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거기는 단원제라고 해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복수의결권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실질은 같지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다른 나라는 명칭이나 실질이나 다 똑같은 거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제도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지금 모태펀드에 대한 의존도를 장기적으로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중기벤처부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벤처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벤처캐피털이나 벤처투자시장은 점차 확대시켜야 된다고 하면 민간이 다른 여러 분야로 투자하는……

○최강욱 위원 이게 지금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기업에다가 옵션 하나 더 추가해 주자 이런 의미

잘아요, 제도 설계한 취지가.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실제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하나의 옵션이 더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보고 그리고 다른 금융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옵션이 있으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반대 의견의 핵심은 결국은 그간에 정부가 보였던 태도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재벌이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뭔가를 노려서 또 제도를 바꾸고자 할 때 중기벤처부가 나서서 그걸 과연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냐, 향후에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이후에 그게 보통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룹에 편입하지 않는 무슨 이상한 꼼수를 쓰거나 하면 그것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거에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동 제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벤처기업의 운영과는 좀 다른,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법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이름, 그다음에 복수의결권의 도입 내용은 정부가 관보에 게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전 단계에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은 중기부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요 기업은 또 이를 장부에 비치하면서 고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관리·감독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강욱 위원 고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복수의결권이 도

입될 때, 그다음에 그 내용이 변경될 때 그렇게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변경될 때…… 변경되면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조목조목 질문해 주시고 설명을 또 잘 알아듣게 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권철승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모태펀드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 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가 그냥 정책적인 의도가 없이 벤처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게 투자하는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칸막이들이 있고 그 퍼센티지가 다 있어서 결국에는 국가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의도가 스며들게 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18번 법률안에 대해서 조주현 차관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법안이 4명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전주혜 위원 그리고 정부안이 제출된 것은 2020년 12월 23일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습니다. 당시 정부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매우 중요한 의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또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 이게 결국은 또 변질될 수 있다, 특히 어떤 상속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이

런 것들이 그 당시 소위 심사에서 다 논의가 됐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산중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고요. 한 1년여 논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법안으로, 당시 우려 사항들을 반영해서 상당히 제한된 형태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산중위 자체적인 어떠한 청문, 관계자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공청회도 있었고요 또 의원실에서 개최한 공청회도 있었고 아마 네 번 이상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이렇게 복수의결권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이게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사실 벤처기업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주주의 경영권이 침해가 되면 오히려 벤처가 더 발전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상의 문제점을 반영한 게 이 복수의결권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은 벤처기업육성법이고 근본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관련된 논란의 우려가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능력 있는 창업주가 소액주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어서 그분들의 경영권을 제한적으로 더 크게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대주주의 문제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전주혜 위원 그리고 법안 내용을 보면 이게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또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발행인의 대상도 엄격하게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복수의결권 주식의 전환 이런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의결권도 제한하고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심사를 하게 하는…… 이렇게 보면 이게 오히려 악용된다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은 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시하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에 대한 예방 장치, 방어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결국은 이것의 도입을 찬성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인데 얘기를 들어 보면 산자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드러난 마당에 다시 이것을 지금 법사위에서 또 이게 찬성이나 반대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절차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우려하는 지점은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다 어느 정도는 입법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늘 이 법을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제 14항부터 1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일단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권철승 위원님께서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하도급거래법과 함께 논의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전체회의든 2소위든 좀 보류를 시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무위 하도급거래법이 법사위에 넘어 오면 병합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괜찮겠습니까?

○권철승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 이견이 없었고, 18항 벤처기업육성법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습의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 법 조항에도 명시적으로 세습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막아 놓았지요.

그다음에 일몰에 대해서 연장 또는 삭제 주장을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하면 어떨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가치나 이념이나 또 세계 경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때 국회에서 잘 검토해서 판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도 아마 이게 일몰 연장이나 삭제 주장이 있다 그러면 치열한 논쟁이 있겠지요. 이것은 훗날 국회에 맡기는 것이 어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모태펀드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박주민 위원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또 조정훈 위원님께서 이 법에 회의적인 근본적인 출발점은 모태펀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조정훈 위원님께서 모태펀드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 김대중 정권 때 이 펀드 가지고 한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2018년도에 모태펀드가 제 기억으로도 그때 한 8000억인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논란이 있었나 하면 모태펀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 우리가 그런 전례를 겪었지 않냐,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여러 번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0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태펀드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지금 딱히 별다른 문제점은 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모태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제 기억으로는 들어 본 게 별로 없어요.

○권철승 위원 이게 벤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의 큰 줄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도 모태펀드,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책임성과 투명성 이 부분은 제가 제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했고 한테, 그 뒤에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도 볼 때 아직 심각

한 문제가 노정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오늘 좀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떠나라는 의견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도읍 예, 시간을 넣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하시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통과돼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현재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상임 위 논의 과정에서 재벌세습으로 상징되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때 장관이셨던 권철승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법상 1주 1의결권이 라는 중대 원칙의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효익이 압도적으로 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 없는 주식, 비상장의 경우에는 경영주와 투자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경영권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이 이미 두세 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왜 안 쓰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안 쓰니까 세 번째 걸 또 도입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두 가지 것에서 쓰지 않는 그 이유들을 공부하지 않고 세 번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벤처기업의 육성을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당 이름이 시대전환입니다. 왜 그런 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제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3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정말 단일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읽어 본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고로 벤처협회에서도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처음에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복수의결권을 사용하지 못해서 당장 큰 것이 될 게 아닌 이상 지금 이번 달에 이것을 저희 법사위가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것의 실익이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잠재적 위험을 과연 넘을까, 저는 아직 좀 질문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나가셨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셨고 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몇 위원님들이 전화 주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위원장님, 법사위가 지금까지 잘해 오시는 것처럼 최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소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복수의결권 때문에 깨지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직 위원장이 결론을 안 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도읍 가 볼까요, 그럼?

○조정훈 위원 저도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 모태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들어 보고 권철승 위원님하고 차관님, 장관님 등등 해서…… 모태펀드가 아까 50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통계에 의하면 65%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2소위는 아니니까 한 번 더 계류시켜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조금 전에 조정훈 위원님께서 벤처기업협회에서 복수의결권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처음에는 그랬고 지금은 찬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지금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최근의 SVB 은행이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은행 같은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의 상황에서는 벤처기업 창업주들이 투자를 받을 때 그 의결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기업의 가치를 많이 크게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희석이 덜 되는 데 지금은 가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더 많은 지분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벤처기

업의 투자 지분 희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질문처럼 벤처협회에서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 부분에 대한……

○조정훈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찬성이고.

맞지요, 그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벤처 선진국의 경우는……

○조정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VB 투자은행 위험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분 희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분 희석의 문제는 벤처 투자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가치평가받는가의 희석의 문제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차등의결권 중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경영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은 현재 주식 총수의 25%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이……

○조정훈 위원 그거라도 써 보고 부족하면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실제로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시므로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이석 전에……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차관님, 잠시만요.

권철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철승 위원 지금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부위원석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견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고 얼마든지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낙천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염세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형량을 해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이고 이걸 계속 더 봐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지금 회의 진행하시는 게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찬반의 논란은 이제 전체회의에 가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몇 명씩 나와서 여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깊이 있게 하고 전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16항·1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바로 다음 개최되는 전체회의, 즉 오늘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8항 법률안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토록 하고 다음 전체회의 때 처리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전문위원님, 기재부로부터 의견이 왔습니까?

○전문위원 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면 됩니까, 수정 부분 있습니까?

○기동민 위원 이게 공공약국 맞나요?

○위원장 김도읍 예, 맞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 사안 아닌데.

○위원장 김도읍 그 사안 맞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 사안이예요?

○정점식 위원 예, 공공심야약국.

○기동민 위원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정점식 위원 예.

○기동민 위원 그건 얘기를 들었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불법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장 조치가 방통위하고 조율이 되었다고 해서 검토보고서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감사합니다.

처장님……

○최강욱 위원 기재부는 입장을 왜 바꾼 거예요? 국고가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글썄요. 제가 그때 조금 강력하게, 저희들 회의를 했고. 그런데 공공성이라든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아마 제가 그때 기억으로도 100억 남짓 그 정도……

○최강욱 위원 그때 많지 않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설득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19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합의된 사항 또 기재부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16시16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기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유상범 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와 협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시행명령……

○유상범 위원 시정명령을 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규정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조치를 안 한 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처벌 조항에서 굉장하,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와 책임을 지는 자가 분리되는 문제점도 보니까 법안에서 다시 수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유상범 위원 이렇게 정리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지정·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이법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출범을 준비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공포 후 1개월 내에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밖에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법안인데요. 법안 내용 중 제35조와 제36조에 교육자치와 교육자치특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들이 독소조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35조 1항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분권법 제12조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사실 이 조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도지사는 정당 소속으로 선출되지만 교육감은 특정 정당 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사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법상의 ‘통합’ 문구를 ‘연계·협력’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에 개정안도 발의되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행안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문구를 그대로 법률안에 옮겼고 심지어 제36조에는 국가가 직접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교육 사무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됩니다.

행안부차관님, 법안 만들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가 안 됐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행안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 의견을 받아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별도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권인숙 위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배치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해당 상임위 입장도 들어보지 않은 채 통과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장이 법사위원장께 공문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이 법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빌미 삼아 교육자치를 훼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위 진보·보수 교육감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문제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법안 심사2소위로 보내서 타 법과의 충돌 여부부터 위헌적인 요소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일단 차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통합 법률안과 기존의 지방분권법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관련 조항이 있는 조항을 그대로 우리 이번에 통합 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난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 조항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행안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에 의견을 별도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위 소위에서도 논의할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조항을 10년간 유지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 사업이,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사업과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보다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통합 논의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님, 차관 답변이 됐습니까?

○권인숙 위원 아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적 요소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2소위로 보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장님, 위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인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우려가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게 현행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년 동안 통합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정부에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저……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조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법사위 행정실에 공문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문은 국회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 의견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교육위 일부 위원들과 그다음에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보낸 의견이고 국민의힘 의견, 전체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식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지금 통합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을 해서 지방분권법 제12조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통합 법률안에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혀 한 자도 지금 틀린 게 없거든요. 그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합이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까 제가 몇 가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도 유지를 하면서도 지방자치와의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지방자치학회라든지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교육자치를 인정하지만 지방자치와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것도 정부가,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 노력을 한다는 조항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형수 위원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육자유특구 여기에 관련해서 이게 헌법 위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는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자유특구를 국가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자유특구는 간단

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지역 소멸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력 여건을 개선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자유특구를 이번에 법에 반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해당 지역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추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라는 그런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의, 교육부의 기본적인 관장 사무로서 정부조직법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사실상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 모두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하는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유특구를 교육부 본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교육의 여건을 맞추어서 시도지사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이 법안에 보면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또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따로 규정되는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가칭 법률이라든지 여기에서 규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특구를 지정·운영한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관련 내용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것은 저는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대단히 선언적인, 추상적인 문구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 예민한 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교육자치와 행정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거냐에 대한 복선이 깔린 문제라서 저는 한마디 한마디 주는 단어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이지만 대단히 구체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여서 이것을 찬성하고 밀고 나가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또 조문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더 농축시켜야 된다, 축적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의 전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정식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자치의 한 축인 시도교육감님들 전체가 의견들을 모아서 좀 더 교육계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주고 있느니 만큼 오늘 당장 처리하는 것보다는요,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보내서 좀 더 충분히 교육계의 의견을 듣든 해서 차분차분 처리해 나가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님하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장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겠지요.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물론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근사한 규정이 국회법 제83조가 있지요. 이것은 주체가 의장입니다. 의장이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교육위원장은 여기에 또, 의장이 주체가 되는 83조 적용 대상도 아니고 해서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마치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공문이 수발이 되었습시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교육위원

회 공식 공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책상 위에 이 공문이 있을 건데 2항과 3항이 지금 설시가 되어 있는데……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배부해 드리세요. 배부해 드리시고……

검토해 보시면 이게 법에 상충된다, 지금 법안 제35조가 교육기본법과 헌법 제31조 4항에 배치된 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배치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볼 때마다 부합을 하지 배치된다는 건 모르겠고, 법안 36조도 마찬가지예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위원장 김도읍 이 논의가 될 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행안위에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통합과 관련해서, 연계 협력과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논의가 있고 이게 합의 처리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기존에 통합 조항,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10년 이상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지금 35조가 헌법 31조 4항 위반, 교육기본법 제5조 1항 및 제6조 1항에 부합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다 부합하거든요. 맞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도 국가의 책무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13조나 지방교육자치법 2조와 상충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자유특구는 국가가 해당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

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조직법상에서도 교육부의 기본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교육기본법에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전체적인 교육과정 기준·내용을 정하고 지자체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내용을 정해서 각각의 업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기본법이라든지 헌법의 조항에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36조에 있어서 이게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침해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교육에 대한 기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게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하는 역할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이게 주장을 위한 주장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 교육위원회에서 온 이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2항·3항이 자체 내에서 이게 뭘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 뭐가 상충되고 뭐가 부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시된 내용 그대로도 상충되지 않고 다 부합하거든요.

이 주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법안을 2소위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장을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교육감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35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통합과 관련되어서 독립되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독립성 있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 35조를 근거로 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게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1항에 전부 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 단체에는 전부 다 정당 공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통합으로 더 가깝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교육의 자주성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난 10년 동안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에 통합의 필요성도 여러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통합 노력 의무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방자치학회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사업도 온종일 돌봄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사업이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조항마저 없이 정부에서 교육 관련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 지역에 가면 당연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력하고 함께 투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근거 조항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자유특구 자체를 설치하여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한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 조항도 어떻게 보면 근거 법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뭔가 모법에서 근거 조항을 두고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구체적인 지역의 교육 강화를 위한 한계라든가 아니면 교육자치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여기 36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고 어떤 이유만을 딱 적어놓고 있어서 과연 이 조문이 사무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그런 통합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 교육자치특구에 대한 그런 기본법에 대해서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조만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이 조문도 같이……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게 특별법이기에 때문에 먼저 근거를 두고 개별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을 법률 규정에 그대로 옮겨 규정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도

적 실체의 모호성이 있어서 향후에 이걸 근거로 우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제도와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호한 통합이라는 단어, 근거 조항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걸 전 고민해야 된 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이대로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헌법이라든 가 다른 교육기본법 또 교육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조금 체계상 모순과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 관님 말씀처럼 당장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실효적인 그런 것들이, 실체적인 근거조항 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차례 정도 더 토론을 해 서, 아니면 2소위에 계류를 시켜서 한 번 더 논 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안은요?

○김남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안은요, 김남국 위원님?

보통 문제 제기하면 대안 이런 건 없습니까?

○김남국 위원 2소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같이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논의하면 그러니까 대안, 방 향?

권인숙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권인숙 위원 아까 계속 10년 동안 이 조항이 그냥 유지됐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 까 21년 12월 7일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동법 제12조 12항 개정 제안을 했었고,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통합을 협력으로 개정하자는 안 건 심의 의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님 이 내신 법안이지요. 그러니까 지방분권법상에서 도 이것을 바꾸자라고, 통합 문구를 연계 협력으 로 바꾸자라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지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런 논의는 있었 습니다.

○권인숙 위원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게 교육자치에 대한 헌 법적 가치가 워낙에 굉장히 명문화되어 있는 거

고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교육은 교육 본래 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 니까 중립성이라든가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애 기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상의 가치와 충 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 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변화에 대해서, 협력이라 는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던 거 고, 이것이 그냥 무시되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자유특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고요.

○권인숙 위원 아니,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김도읍 답변 들어 보십시오. 질문하셨 으니까 답변 듣고 또 질문하십시오.

○권인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여러 가지 연계 협력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말씀도 있었고 또 아마 교육감 계열에서 의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에 대 한 노력도 기본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그 령게 생각을 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연계와 협력이라는 그 런 관념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대안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그것들을 통합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서 또 국가가 직접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을 때 ‘국 가가 직접’이라는 용어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그 문구가 갖고 있는 이 특성에 대해서 지금 우 려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한 번 논의를 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 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그 래도 현재로서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이 라는 용어로 합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위에서 이것을 얘기할 때 교육자치와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쪽에서 의견을 받으면서 논의가 된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야당에서 제기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교육 관련해서 이 법안을 냈던 장민정 의원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충분히 같이 논의가 됐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교육위나 이런 데서 교육위원장님도 그렇고 시도교육감협의 회에서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 특별법이 한번 행안위에서 계류가 되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사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제시 안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이걸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가치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요.

○위원장 김도읍 체계·자구 심사만 하라고 위원장을 그렇게 몰아세우더니 지금, 참……

○권인숙 위원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얼마나 몰아세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니 참……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너무 상황이 달라져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차관님, 교육위원장이 저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10년 전에……

○전주혜 위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이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조항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 법 12조 2항에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하셨습니다만 2개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이게 2개의 법률을 통합하면서 새로 생긴 조항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개 법률을 통합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기존의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새 정부의 지방시대 위원회 관련 과제를 신설한 그런 통합 법안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 협력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여기도 보면 기존의 법 12조 4항에도 이게 있어요.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거기에 따라서 교육자치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교육자치법에 따라서 또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선언적 규정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헌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무슨 헌법에 뭐가 지금 위배된다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36조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36조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특구에 관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자유특구는 그 근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별도의 법률을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도교육감과의 협의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국가가, 특히나 행안부가 이것을, 교육자유특구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교육자유특구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인 지정·운영에 관한 절차라든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지 사실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주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 이것은 무슨 정부가 바뀔다고 해서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안위에서 논의를 해 왔는데, 또 없던 조항도 아니고 있는 그 조항 그대로를 35조는 옮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별도의 법률로 통합의 부분은 규정하게 돼 있다고 차관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교육자유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법안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법안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법안이 오늘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어느 분이 먼저 손을 드셨는지 모르겠네.

○정점식 위원 제가 먼저요.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그러면 잠시 간사님은 조금 계시다 하고……

○정점식 위원 예, 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차관님, 법안을 보니까 어쨌건 지역 살리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도 두고 또 공장이라든가 이것만 가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니까 거기다가 교육까지 자유특구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형 발전모델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맞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승원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의 교육을……

○김승원 위원 보니까 수도권 공장 이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아마 교육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 조항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진행이, 이행이 되거나 그 취지대로 가면 좋은데 교육자유특구라는 게 선발이라든가 또 커리큘럼이라든가 또 교원 임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유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컨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랄까요, 귀족학교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원 선발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재단의 또 전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 교육의 커리큘럼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우리 헌법상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자주성일까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의 가치이고 그것은 법률로 보장하도록, 헌법에서 수호하고 법률로써 그 세 가지 그것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헌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차관님 말씀에는 효율성 단어를 많이 얘기하셨고요, 교육에서의 효율성.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자치하고 지방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헌법상 우리 교육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과 마치 배치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혹시, 이 후속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유사한 법률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별도 법률을 제정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만간에 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교육위에 상정이 되면 충분히……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통합이라든가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해 주시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 부분은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게 별도 법률이고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부분은 별도,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에 대한 답변을 어느 누구도 주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나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체적인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교육부의 기본사무로서 교육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게 교육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그런 결로 본다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감, 시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교육자유특구라는 그런 제도하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교육의 자주성은 전혀 훼손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특수학교라든지 그런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도 그런 특성화 학교는 공교육 내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도 어떤 특정 전문 직역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또 지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통과시켜서 뭘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김승원 위원** 아무튼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법을 만드시고 또 부작용에 대한 어떤 방지책 같은 것도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저희가 못 들으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것은 교육자유특구법에서 아마 자세하게 논의가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걸로……

○**김승원 위원** 이 부분은 혹시 그러면 추후 보완하거나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두거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승원 위원** 35조, 36조.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것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대한 노력은 2010년도부터 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근거 조항만 두고 개별 법률을 별도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아무튼 저도 제 의견을 드리면 이게 나중에 귀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국민적인 토론이라든가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제……

○**김승원 위원** 그래서 전체회의나 2소위 회부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아니,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그럴게요.

그다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자유특구를 통해서 인구소멸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자 이 취지지요, 거칠게 표현해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투자활성화 또 교육의 공교육, 경쟁력 개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이고 또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하게 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건 행안위 과정에서 조금 추가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기회발전특구는 문제가 없고 질의가 안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35조·36조, 35조는 있는 법을 그냥 갖다 넣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으셔서 약간 억울하실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사실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35조 삭제하고 가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히 저희들은 문제가……

○**조정훈 위원** 35조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법의 실질적 효과에서? 36조는 다른 거지요, 교육자유특구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때 처음에 신설되어서 이 조항을 운영하는데 국가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통합 노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몇 번 말씀 올렸지만……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건데 선언적 의미를 길게 가져가실 건지, 이 법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것 통과시켜서 인구소멸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선언적 의미가 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길게 가는 실익이 과연 있을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또 용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수용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36조는 교육자유특구 설치 운영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거니까 근거 조항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공교육이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조정훈 위원** 공교육에서 귀족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실은 인구소멸 지역에 귀족학교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애들 교육시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공교육 활성화지 귀족학교 양성하는 그런 교육자유특구는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래서 대안을 자꾸 위원장님이 강조하시니까, 35조는 논쟁이 그렇게 크고 실익보다는 상징적 의미라면 지금 법률을 상징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삭제하고 36조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글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락을 좀 짚고 가야 될 게 권인숙 위원님께서 강민정 의원님이 통합이라는 말 대신, 지방분권

법의 통합이라는 말 대신……

차관님, 좀 들어 보십시오. 통합과 관련해서 권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강민정 의원님께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거기에 통합 대신에 연계 협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런 개정안이 있으니까 10년간 이 통합이라는 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문제 제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11월 30일 날 강민정 의원님께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이게 행안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행안위 위원님들이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합의하여서 통합을 연계와 협력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책상머리에 놓고 이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차관님께서 지금 현 선거제도 토대 위에 지방분권법상 통합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말은 맞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김승원 위원님께서 수월성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명한 것은 이 교육자치특구는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수월성을 높인다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부산광역시, 아니면 부산광역시 안의 무슨 구 그렇지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의 정주여건을 강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시키고 보다 좋은 학교와 공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부산시장과 교육감이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다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35조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1항에서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전형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향후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규정이고 여기에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침해됐다고 평가할 어떠한 자구 해석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헌법상의 가치에 관련된 건 2항에서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거 따로 법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에 따로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따로 있잖아요. 이 교육자치법 안에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됐다면,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논란이 되어야 되지 이 규정 자체에서 헌법상의 가치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걸 물리해석상도 그럴 수밖에 없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할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지역, 인구소멸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들어오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법사위에 있는 위원님들을 제가 죽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인구소멸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정점식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로 공교육에서, 제가 특정 학교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평창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전 학생을 상대로 오케스트라와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애들에게 다양하게 인문학적 소양을 증가시키는 교육을 시도했어요. 특정 교장선생님이 오서 가지고 한 5년 동안 했더니 교육의 질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많은 젊은 부모들이 학생과 같이 그 지역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의 인구가, 특히 젊은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젊은 부부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은 제일 먼저 교육을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자기 아들이 소위 대도시의 아주 좋은 교육에 버금갈 수 있는 교육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게 지역의 부모들 희망이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획일화된 공교육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특화된 교육 또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나 선수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행안부에서 나온 교육자유특구라는 개념이 아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할까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귀촌 인구도 늘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특히 교육 부분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단지 이것을 무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굉장히, 한 국가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인구소멸지역이 어찌면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소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 주변에 들어 보시면 농촌 의원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통합이 필요하나? 지방교육청과 광역단체가 교육과 관련해서 협력 관계는 지금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협력…… 아마 국회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협력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초등돌봄 같은 경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양육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것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된다면 지자체하고 학교 간에 협업을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방과 후의 아이돌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된다면?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지금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학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 뭘 할지, 결국은 학원을 보내거나 한단 말이에요. 사교육비 절감시키고, 학교 커리큘럼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한다면 이게 일거양득이 아니고, 지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출산을 떨어지고 하는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고민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민정 의원님께서 통합을 협력과 연대로 바꾸자, 연계로 바꾸자라는 것을 책상 위에 놓고도 통합으로 그대로 합의 처리를 했던 말이에요. 왜냐? 이런 실익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대학 지금 소멸 위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하면서 산학연대를 한다든지 해서 지방대학을 살림으로 해서 지방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하나의 사활이 걸린 거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하시는지……

수월성 문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레이트 업을 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특정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정부가 여러 간담회·공청회,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료들은 다 축적돼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히 민주당 위원님께서 제기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 요구를 하시면 자료 제시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관계기관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이것은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충정으로

이 법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또 차관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늘 대승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고 지역에 가시면 참 풀지 못할 문제 아닙니까, 이 교육 문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법이고, 조금 전에 제기하셨던 문제들은 차관님 답변을 통해서 또 필요하시다면 아마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간의 과정들이 다 보도도 돼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장님, 제가 통합 관련해서 현황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현재 시도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고 상임위원회 하나로서 이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느 분이 먼저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점식 위원 간사님이 대표로 말씀하시고 저도 대표로 한마디 하고……

○기동민 위원 대표는 아니고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의견은 있어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제 개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논쟁이고 예민한 논쟁인 거지요. 정당 내의 대략적인 합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 나가는 방식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교육자치의 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역시 지난한 선거 과정과 또 예산·행정 집행 과정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의식을 통합시켜 나가는 게 저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말씀 맞으시지요. 또 일리 있는 부분들이 꽤 많고요. 그런데 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틀 때는 그 제도 변화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논의를 하려면 교육위원회 의견들을 물어보는 그게 정답이에요. 교육부의 의견도 물어보고 교육위원회 의견도 물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때 토론할 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이제 뒤늦게 발목 잡는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적 행정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 국민적 고민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도가 이 문제를 앞서 나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또 이 문제를 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뒤늦게 혹은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도교육감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도 같이 한번 따져 보자는 얘기인 거지요. 이렇게 인식의 간극이 있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차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걸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무슨 35조·36조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2소위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보내 가지고 무작정적으로 발목 잡는 형태로 토론에 임하지 않겠다, 몇 번의 책임감 있는 토론을 가지면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전 내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문제에 대해서 세 번, 네 번째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그만큼 현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때문에 지극히 신중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토론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지금 대안이 무엇이냐? 지금 대안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분들의 의견들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출발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충

분히 토론했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권인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방과 후 돌봄과 지자체 돌봄 통합하는 얘기, 통합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겁니다. 돌봄이나 대학사업,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자체와 연대·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효율적 시스템들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마치 이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통합돼야지만 얘기가 되는 식의 그런 효율성의 얘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면 애초에 교육감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통합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방과 후 돌봄, 지자체 돌봄 통합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것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통합의 위험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기동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쪽의 강한 우려들을 이 속에서 잘 담아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방과 후에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을 하고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돌봄터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인숙 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저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교육위원장이 왜 개인 명의의 이러한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께서 지방소멸 이야기를, 지역소

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6개 시군 지역 중에서 고성군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는 일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으니깐 젊은 세대들이 다 소위 중소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대도시로 이주를 하는 거지요. 그만큼 교육의 문제는 심각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방과후 돌봄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35조와 36조에서 계속 1항만 이야기를 합니다. 35조 1항에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또 한편으로는 소위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35조 2항에서는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맞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36조에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역시 운영할 수 있다는 국가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항에서는 소위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그것은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장 개인 명의로 이런 공문을 법사위에 보내기 이전에 부여된 권능에 따라서 자신들의 위원회에서 시·도교육감의 의견도 듣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소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점식 위원 소위 35조의 1항에서 통합을 위

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정비를 해서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가능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장이 개인 명의로 해서 이 법안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방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주장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차관님도 같은 취지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기본적인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별도 법률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교육에 대한 기본정신은 충분히 개별 법률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두 개의 법률을 이번에 단순 통합하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계협의회 또 간담회 이런 걸 여러 차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광역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여기에는 민주당도 있고 단체장이 국민의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의견이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연계하는 것을 지속 유지해 달라는 공식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반대하는 지자체장은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시·도지사 전체의 의견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물론 교육부 소관입니다만 지방교육감 또는 교육청과도 협의회 개최를 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시·도교육감님들은

아마 통합보다는 연계 협력이라는 용어를 좀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해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전체 대한민국 세수의 이십몇프로입니다, 십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육감들이 쓸 수 있는 재량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이게 돈이 제대로 쓰이느냐, 다 쓰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뭘 해 보려고 해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저는 자칫 시도지사협의회가 이걸 없이 찬성을 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혹여 밥그릇 싸움에 의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나온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 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혹시 그런 기류는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교육청과 시·도지사 간에 어떤 재정, 예산 측면에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를 않았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아까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서 통합운영되고 있듯이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육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의 취지이고, 그렇지요? 혹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어떤 이러한,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보다는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나 이런 내용으로 이 법이 진통을 겪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21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셨지요?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아까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기동민 위원 예,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윤희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윤희근 청장님은 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요즘 좀 헛갈립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종잡을 수가 없네.

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367)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2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6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경관 가치 증진 목적으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3조제4호에서 국가가 공원관리청 등에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현행법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원 규정은 중복되는 것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판례를 법문화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원이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로3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보전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찬성 측 견해가 있는 반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급부의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반대 측 견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민법 등 기본 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점, 현행 노동조합법 및 관련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장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위법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민사상 법체계 및 형평과 정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용자의 범위 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유제철 차관님, 권기섭 차관님 두 분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우선 지금 아마 토론이 26항에 관해서 집중될 것 같은데 먼저 22항, 23항, 25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의견이 있으면 먼저 하고 26항으로 넘어가는 걸로……

○위원장 김도읍 그러시지요, 효율성을 위해서.

○정점식 위원 우선은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정점식 위원 자연공원법, 24항과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20조의2에서 이렇게 공원관리청이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지원 규정을 둘 필요 없다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기재부 의견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20조의2 3항에 근거가 있고 또 43조 1호에도 지자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43조 제4호는 이번에 반영을 안 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법안이 그대로 환노위에서 통과됐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당시에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었고요, 법사위에 왔을 때 기재부가 의견이 왔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님은?

아니, 소위 공원관리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관리청이 되었을 때는 소위 국가가 지원할 의무를 43조입니까, 개정안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국가가 지방공원, 예를 들어 도립공원 관리주체인 광역단체, 예를 들면 경남도에게 지원을 할 필요, 그 규정은 지금 이 개정안에 따라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님, 지금 친구 조문대 비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43조 1호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고 1호가……

○정점식 위원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다 이 말인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43조 4호는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23, 24, 25항과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25항은 지난번에 벌칙규정이 상향하게 된 문제점이나 그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내신 걸로 아는데 잘 정리를 하신 건가요, 제대로?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정리를 하고 그때 의

견을 주셨던 유상범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신정훈 위원님께서 벌칙 상향 제안을 해 주셔서 환노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지금 98%의 높은 가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벌칙 상향은 하지 않고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하고, 일부 가입을 해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영업정지 10일·3개월·6개월 이렇게 해서. 위법 없이 다 보험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법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다음, 26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자료를 조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나오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지금 이 법의 통과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 당시 출석해서 계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지금 이 법이 상정조차도 반쪽 자리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때도 참여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그때 안전조정위원회에 제1 정당이 아니라 제1교섭단체 이외의 몫으로 어느 의원이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국민의힘 두 의원 외에?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10분 만에 안전조정위원회가 끝났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안전조정위원회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충분한 심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안전 상정 그리고 안전조정위원회 회의 그리고 또 환노위의 전체회의,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법의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여러 가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견이 별로 좁혀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현재의 일부 재판관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만 많다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은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만을 가지고 안전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또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가 저는 헌법 49조 1항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방법으로 이 법사위에 왔다,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우선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일단 그런 면에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래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토의된 바가 없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에 이게 공동책임이 아니라 개별책임을 하라는 게 이 법안의 내용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저는,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공동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책임을 개별책임을 진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개별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법무부와 또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이게 결국 문제 되면 이게 지금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소송법 체계나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정신 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법에 이 공동책임을 규정한 이런 것에 지금 굉장히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예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조회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많이 자행이 됐지요.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사실 천문학적인, 한 4500억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만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소송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개별책임은 사실 가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면 사실 불법행위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눈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반드시 2소위로 회부해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전 위원님이 법원행정처 의견을 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만들어 준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검토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김의겸 위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분명하게 ‘근로자 개인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의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문구와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고, 그건 ‘국회가 결정할 내용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법무부……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책임에 대해서 민법상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노동법이나 쟁의법 이런 것들이 민법에 기초하고 기반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근로자·노동자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꼭 특별법이라기보다는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저희 노동조합법에다 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한 실익이나 필요성 또는 예외 사항을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겸 위원 제가 참 그게 신기해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고용노동부·법무부 세 군데, 김영일 전문위원님이 쓴 보고서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 법에 가장 반대하는 게 법무부고 그다음에 중립이 법원행정처고요. 노동부는 사실 적극적으로 노동자·근로자의 편에 서서 입장을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는 공감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법무부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인지 사용자부의 입장인지 이것부터 좀 헷갈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오히려 거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인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명확히 하면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분명히 나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오기 때문에, 설사 그게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또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어찌

보면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이 법이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체행동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대개 행위를 저희가 작년에 분석해 보면 특정 노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장 점거 또는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거의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억제돼야 되고 근로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규정할 때 사업장 점거나 폭력이나 이런 걸로 위반돼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쪽을, 그러면 관행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불법행위 사업장 점거나 수단을 제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아까처럼 사업장 점거나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부진정연대책임을 개별 행정책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원래 제가 알기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두는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 우선 단체의 여러 사람들의 단체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여기 저희가 단체행동, 아까 사업장 점거 금지를 했을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갔을 때 과연 누가 그러면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에 개인이 숨어 버릴 수가 있고 개인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노조법에서 단체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타 외국의 입법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불법행위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인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연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도 같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두텁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불법행위를 규정한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 의무자를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사용자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 입증하는 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책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규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업장에 들어갔는데 1000억짜리 기계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아무한테도 책임을 못 지우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는 점을 아까 차관님께서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지금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법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하면 하청기업이 수십 개 있는, 뭐 수십 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개 있는 그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하청기업에서 내가 사용자가 되는지 건건별로 계속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청기업에서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내가 응해야 되는 것인지 안 응해야 되는 것인지 매번 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느냐, 그걸 사용자가 어떻게 따져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률은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혹시 규정하는 그런 입법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는 특별하게 그런 입법례를 찾지는 못했고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노동관계법이랑 노동조합법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업장 단위로 해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장 내의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교섭 절차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 교섭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다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범위를 되게 추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죄형법정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원하청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충분히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는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청과 원청이 교섭하는 식으로 이중구조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노동조합법 전체를 다 손봐야 되는 상당히 큰 작업이 필요하고 꼭 그걸 위해서 또 그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사실 근로손실일수나 이런 걸 볼 때 노사관계는 전체적으로 다 많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안정 문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경우에 어느 업체와 지금 내가 교섭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지금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전 법률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라는 말이 빠지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시점에 쟁의행위가 있고 파업이 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상시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이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간에 사실은 노동쟁의 대상을 이익분쟁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익분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예전의 개정법이, 그러니까 법 개정 전이나 후나 현재까지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이익분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권리분쟁은 사실 지금 법원이라든지 민사소송 절차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근로감독관의 여러 가지 개입을 통해서 현재 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권리분쟁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시 또 노동쟁의 대상으로 했을 때는 노사관계의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더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대상 범위를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먼저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저도 노동부차관님께 좀 여쭙볼게요.

지금 이 장면을 환노위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진행 과정에 관한 허위 주장은 정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셔서 그런데, 소위가 지금 여러 번 열렸고 공청회도 열렸

고 한 건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최강욱 위원 거기에 여당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참석을 안 하신 거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최강욱 위원 참석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지요? 안전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위 회담 개최가 있었고 의견이 그렇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신 거냐고, 쫓아낸 거냐고, 논의를 못하게 한 거냐고? 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퇴장하셨거나?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일단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저희가 노동법을 법학개론 이런 것 배울 때 사회법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최강욱 위원 그게 민법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법 이론이 발전해 온 것 아닙니까, 사회법이라고 하고.

이것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니까 부진정연대책임의 근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최강욱 위원 법원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게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입법정책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점이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걸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개념 잘 모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최강욱 위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논의된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자본이나 권력의 우위를 점한 측에서 소송을 통해서 아예 사전에 권리 행사를 봉쇄해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남용돼 온 우리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에게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상의 처벌 조항 그다음에 형법의 업무방해죄까지 대한민국의 특이한 조항으로 계속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소위 손해배상 폭탄이라는

것을 남발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법안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 왔고 그것들이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서 의결이 돼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마저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시고 체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식의 의견을 내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곤란한 입장에 계신다는 것 알겠고 무엇보다도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이끌어 가는 정부가 되다 보니 거기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얘기해 봐야 적극적으로 받아 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인식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자들 입장은 불안한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을 더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논의들이 국회 환노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법안으로 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도 조금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게 논의의 장이고 이런 곳에서 다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결국은 의결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 논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넓은 인식과 안목을 가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일단 최강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고용부차관님은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노동의 입장에서서 대변해야 되실 분입니다. 지금 기껏해야 중재자 또는 약간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안이 통과된 게 2월 21일인데요. 법사위에서 이 논의해 봤자 어차피 60일 뒤에 또 민주당이 직회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허무한 논의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 두 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게 아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었을 겁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조정훈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 꼭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봉투법 반대합니다. 그때 당시 파업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였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중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양대 조직 노조에게는 꿈과 같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우리 국민 1520만 명이 일하고 있고요. 이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0.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이 순간 노란봉투법을 들고나온 그 조직 노조에 저는 분노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후려치기,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 구조, 이 중에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개혁 법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눈물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정규직 노조원 가족들이 하청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들고나온 게 겨우 자신들의 파업의 불법성을 보호해 달라는 이 법안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노동쟁의 범위의 일정 부분 확대안은 동의합니다. 이익분쟁을 넘어서 권리분쟁 일부는 쟁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활동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은 약자이기 때문에 맞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노동도 약간 양극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양극화의 하방에 있는 노동은 약자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쟁의 범위의 확대는 존중합니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 불법이 되었을 때 이 불법의 처벌성에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우리 법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청 문제, 원청 문제, 노동 이중구조 해결하자고 했을 이

상황에서 들고나온 법안이 겨우 노란봉투법인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도 보면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자신들의 불법성 쟁의의,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들고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세력이 과연 헌법 정치를 하는 세력이 맞는지 저는 질문도 듭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제안은 이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해서 헌법의 위배 사항, 다른 법률 원칙주의에 대한 위배 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음,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차관님,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건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팩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건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탄희 위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작년에 큰 이슈였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 파업의 경과라든가 그 당시에 노동조합 쪽에서 요구 조건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팩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당시, 지금 아주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내용들은……

○이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레토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동부차관이고 최고의 전문가이시니까 팩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업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까? 지금 불법파업으로 주로 프레임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파업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제가 어느 부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업장 점거가 시작됐던 부분이……

○이탄희 위원 단체행동을 시작한 것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단체행동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탄희 위원 그렇지요. 왜 이게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논쟁이 되고 있는, 결국은 건조

중인 배에 대한 점거까지 나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

○이탄희 위원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사실 조선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이탄희 위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불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수주를 하고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조건들이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이탄희 위원 그것은 애초에 분규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합법이었던 단체행동이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논란으로 번져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하청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요구했던 사항이 뭐니까? 요구사항 1번이 뭐였어요?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탄희 위원 노조 스스로 1번 요구 사항이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 처음에 단체행동 시작할 때부터, 원청업체랑 교섭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탄희 위원 원청업체랑 교섭해 달라는 거였어요. 원청업체랑 교섭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계속 그걸 요구하면서 원청업체 나와라, 원청업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원청업체가 나오게 할 방법으로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제가 그 선택 자체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점거였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은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본격화하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랑 교섭을 요구합니다. 왜냐? 지금 계약상 사업주하고 얘기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급받은 액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주는데 내가 진짜 사장한테 받는

돈이 100만 원인데 당신한테 어떻게 120만 원 줘니까. 이것 당연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청업체랑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대화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위아 광주공장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청업체가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청업체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이런 노동 현장에서의 불행한 사태를 막는 방법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 볼게요.

죄형법정주의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현재 현행법상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분쟁은 교섭 대상, 뭐 분쟁은 있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탄희 위원 그렇지요.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갔을 때 법원에서 그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 기준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 것이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게 법원 판례예요. 법원이 명확화한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더 모호해집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대법원도 교섭 대상의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 범위는 현재 근로계약을 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탄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요 더 모호해진다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답을 좀 들어 봅시다,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제 질문은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건데요. 더 모호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가 더 모호해지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답을 좀 듣고 말씀하세요.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렇게 자꾸 답을 하는데 잘라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체교섭을 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높이거나 근로조건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단체교섭도 하고 단체행동도 하고 노동삼권이 보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자는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법 자체가 전부 다 근로계약을 한 자를 위주로 해서 법이 다 설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범위를 그렇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해 놓게 되면 실제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라는 게, 지금은 근로계약으로 딱 명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나 지배력이 있는 범위라는 것을 누가 선언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섭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사용주는 자기가 원청이지만 하청의 교섭 대상의 의무 주체로서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말만 가지고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자의 범위만 확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산별교섭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업 단위 교섭으로 체제화되어 있고 법이 다 기업 단위 교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손배 문제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2003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경사노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그때도 경사노위가 민법에서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았지만 결국은 노사 자율로, 민법 손댈 수 없다고 해서 끝났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손해배상 가압류는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였는데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계를 똑같이 느끼고 저희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를 저희가 적절히 아직까지 현실화시켜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선업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섭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뭔가 협의와 대화와 타결을 통해서 해 보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서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지만 모든 것을 노동쟁의와 교섭으로, 이런 걸로 해서 분쟁과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탄희 위원 그래서 교섭 범위를 넓히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모호해지는 게 없어요, 이미.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차관님, 이어서 여쭙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법원행정처는 굉장히 모호한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입법정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법상의 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제 기억에는 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벗어난 이런 개별 책임을 규정한 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이러한 법이 있는지를 저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대우 하청노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호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대우조선해양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면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랄지, 아니면 특히 신원보증인 같은 경우 지금 면책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전주혜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원보증을 안 하는 거나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원보증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회사에 끼치는 행위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를 사실은 다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왜 신원보증이 면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조니까 면책을 해 달라 사실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무슨 다수, 무슨 어떠한 절차를 지금 거쳐 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토론이 없는 일방적인 찬성론자들의 토론만 가지고는 이것이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이게 관련 가처분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앞서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불법이었지요. 보면 일차적으로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25일에 1차 가처분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재시도를 했고요. 작년 6월 2일에는 골리앗 크레인 이동 통로를 점거했습니다. 6월 11일에는 텐트 철거를 했고 고소작업차를 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제1도크의 내부 출입 그리고 작업장을 점거를 했고, 특히 건조 중인 선박의 자재들을 분리, 탈취까지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7월 말까지, 그리고 작년 6월 22일에는 드디어는 건조 중인 선박에서 시너를 휴대할 채 용접 작업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전혀 정당성이 있을 수

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이 피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손해, 사실 이것은 책임 있는 자에게 결국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저는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책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떠안게 되는 것은, 결국은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파산을 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오겠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전체 근로자한테까지 다……

○전주혜 위원 근로자들이 일단 일터를 잃어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요. 또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채무를 떠안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2소위로 회부해서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기섭 차관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사용자든 근로자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위원장 김도읍 형벌이 가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형벌의 대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뭘 해야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행위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추상적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이렇게 확대한다, 그다음에 노동쟁의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 내가 처벌받을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지금 부진정연대책임을,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전환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법 760조 또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750조 불법행위 책임 대원칙과도 지금 상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

33조도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인데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치투쟁을 합법화하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다중이 위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두 분 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 전체회의 때는…… 실장님도 들으십시오.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법제처장 이분들이 꼭 나오셔서 이 법이 과연 체계·자구상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양당 간사님께서도 노동조합법이 심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노위에서 직회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 충실하게 전체회의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자,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이 법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여태까지 다 하셨는데 또 하시게요?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저는 안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세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정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사안들을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름의 원리에 입각해서 판정합니다.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결정사항만 다 인용합니다.

오늘 이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 주신 사항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위원장님 역시 법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균형적인 시각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책임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재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그리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국회는 그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엄청 열심히 토론들 하세요. 그 누구도 대안은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수를 대표하지 못했다, 형식화시켰다, 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전조정위가 구성이 되었다. 아무도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유리한 그라운드에서만 싸우는 거지요, 위원장이 우리 편인 곳, 다수를 점하는 곳. 국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부차관님 불러 모셔 놓고 저 차관님과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위원장 김도읍 아니, 위원장 시비 걸지 말고 본인 하실 말씀만 하세요.

○기동민 위원 시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본인 하실 말씀만 하세요.

○기동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들어 주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십니까?

○최강욱 위원 본인은 다른 분들 말에 다 토 다 시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대안, 대안 하시는데 할 얘기 하시라고.

○최강욱 위원 공평하게 합시다.

○기동민 위원 저도 다른 위원들과 동등한 균형적인 대우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좀 가만 계세요, 매번 끼지 말고.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계속.

○기동민 위원 조정훈 위원님만큼의 대우는 아니지만 대우를 좀 해 주시라고요.

○유상범 위원 잘해 드리고 있구먼.

○기동민 위원 그래서 각자의 처지와 입장 존중하는 건데 그 처지와 입장을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뭔가 합의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법안을 발목 잡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을 부르고 법원행정처를 부르고 헌재를 부르고 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생산적인 토론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의문이 많이 되고요.

저는 진심으로 토론하고 싶다면 정말 날을 잡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왜 환노위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우리 내부의 목소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각자 근거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분한 토론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정치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악용되고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정말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노동관계법이 인권위원장께서도 권유를 주셨는데 왜 한쪽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노사 양극화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악마화시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지, 좀 더 다른 선의를 가지고 해석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절충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의 소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의 소위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과 관련한 제3조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차관께서는 이게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틀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께서 소위 불법 직장 점거와 관련해서 1000억 원의 기계를 손상했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즉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500명의 노조원들이 조그만 망치질 한 번씩을 1000억 원짜리 기계에다가 했을 때 그 기계는 파손이 될 겁니다. 그 파손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 번의 망치질에 대한 책임만 물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법원이 소위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 그 범위에 관해서 판단하는 법원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앞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불가능해도 좋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 그것은

민법의 소위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든지 750조부터 시작한 소위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 자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전제와 다른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위원장께서도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입법정책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주체인, 판단하는 주체인 법원행정처도 불려서 과연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한 정도의 법 조항이냐라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저는 사실은 2소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께서 전체 회의에 계류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견해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게요?

○조정훈 위원 예, 기동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기 위원님께서 저를 많이 배려받는 위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발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안심이 돼서 확인 한번차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노사관계에 상당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은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자구와 헌법적 정신 그다음에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제시한 법무부, 법제처 등등을 부르든 안 부르든 심도 있는 심의를 저희가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정말 이 법안만큼은 그 유명한 86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직회부한다’ 이 조항을 활성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적,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게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 법안만큼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직회부 열차에 태우지 않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 대단히 모순 있는 발언이시고요,

어느 일방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3월 27일 금일 정확하게 2시간 반 정도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찬반 토론에 대해서는 지금 법사위원님들 중에 일곱 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기동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찬성토론을 하였고 조정훈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저 위원장 해서 5명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한 게 아니고 찬반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토론 2시간 30분간 했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때는 법률체계의 전문 부처인 법원행정처까지 모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양당 간사님께서는 전체회의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법률안은 대체토론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님, 유제철 차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2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3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

3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
3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
3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3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3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
4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4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4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4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
4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

(18시3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60항까지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60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사가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1회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당연 취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문자격의 취소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장관에 의한 자격 취소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자격 취소, 등록 취소를 모두 규정한 사례, 징계 절차 없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사례, 자격 취소 제도는 없으나 등록 취소 규정을 둔 사례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전문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요건 및 그 취소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과 자

격제도 강화에 따른 사익 침해 간의 균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의 발생 시점을 양도나 합병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 제17조제4항은 상속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7조제3항이 지위 승계 시점을 신고의 수리일로 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인의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공백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을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보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신설된 제4장은 교통시설의 정비, 교통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가에게 교통안전·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장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을 정한 제5장으로 조문 위치를 이동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그 대상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지구의 지정 제안은 임의규정으로서는 지정이 제안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적용례의 기산점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으로 취소 요건 중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부분을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립 인가의 취소를 제32조의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로는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율을 받는 교통수단 중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한하여만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교통 법질서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주차 및 주차금지 등의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국토교통부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주차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위원장 김도읍 자, 수석님, 그 대목 이하는 서면으로 대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특례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과 기획재정부는 도로교통법과의 충돌 가능성 및 사업자 부담 사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지양 필요성 등을 들어 각각 해당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님, 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먼저 27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1차관님 소관이실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전주혜 위원 지금 이 법에 감정평가사의 직무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자격취소나 이런 것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의견이 국토위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의견 경청의 기회가 좀 있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뭐 법안소위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견 개진한 서면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제출은 안 됐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검토보고서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1회, 한 번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게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을 침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어기는 경우에 자격취소를 한다, 사실 이것은 최근에 전세사기가 또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방금 차관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협회의 의견을 개진을 전혀, 그러니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소위에서 진술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회 측에서 1회 위반했을 때

자격취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현재로는 2회 이상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거쳐 가지고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저희가 1회 위반하는 경우에 자격취소를 할 수 있고 다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에서 충분히 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전세사기가 근절이 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감정 가격을 높게 매겨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전세사기로 이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공공성이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전세사기로 인한 그런 피해가 서민들이나 아니면 청년, 2030세대랄지 사실 다 주택이 없는 그런 약자들이 입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법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전세사기를 근절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전주혜 위원 하나 더 여쭙볼 텐데요.

49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걸 2차관님 소관이신데, 경찰청과 기재부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렇습니다. PM의 주차 문제, 그다음에 주차하고 주차금지구역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수단, PM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충분히 논의해서……

○전주혜 위원 부처 간 협의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래서 전체회

의에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이건을 협의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저는 2소위 회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계류가 아니지요?

○전주혜 위원 전체회의로 그냥……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전체회의 계류하는 걸로.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안번호 40번이랑 55번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고정 가산금 규정을 일할 가산금 규정으로 바꾸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4번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도 여러 가지 관련 개정안이 또 같이 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서 한 스무 개 법률이 지금 다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추가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유상범 위원 하천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법까지. 이것은 나중에 올라오면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게 괜찮겠지요, 54번 법률이랑 같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55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재부가 굉장히 강한 반대를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전세버스는 공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공공시설에 포함 안 되는데 국가가 그와 같은 휠체어 탑승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기본 체계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개인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 2소위에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죄송합니다만 전체회의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왜 2소위로 넣느냐면 저상버스, 이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하면 전체 전세버스 예산을 해 보니까 5년 동안 9130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요. 이걸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구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조해 주고 있고 또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시외버스에 대해서 휠체어 탑승시설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게 효과가 낮기는 하지만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임의 규정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되기를……

○유상범 위원 이것 하실 때는 기재부랑 사전에 서로 협의는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상범 위원 그런데 기재부 반대가 좀 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가 이렇게 강한 것은 실무 협의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지금 차관께서 기재부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시니 일단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걸로 또 기관 간 협의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유상범 위원 55항, 40항, 그다음에……

○위원장 김도읍 54항, 55항.

○유상범 위원 54항. 그러니까 40항, 54항.

○위원장 김도읍 55항입니까?

○유상범 위원 예, 다 전체회의 계류하는 걸로, 추후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위원장님, 27항도 재논의하는 걸로 돼 있나요?

○위원장 김도읍 27항? 잠시만요, 법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재논의가 아닌데…… 전주혜 위원님, 재논의…… 결론이……

○김남국 위원 저도 여기에 의견 좀……

○위원장 김도읍 의견 주시렵니까?

○김남국 위원 예, 짧게……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55항도 유상범 위원님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시고……

○유상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40항도 전체회의 계류 의견 중이시고……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54항도 같은 의견이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54항 전체회의 의견이시고.

전주혜 위원님, 27항은 어떻습니까?

○전주혜 위원 저는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더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좀 세지 않나 싶어 가지고……

○위원장 김도읍 예?

○김남국 위원 좀 세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전주혜 위원님은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시고.

말씀하세요.

○김남국 위원 차관님, 이 27항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 49항도 지금 전체회의 계류 의견으로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49항이요? 잠시만요.

○김남국 위원 차관님, 27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회의 법 행위 위반으로 전문자격 자동 박탈인 거잖아요, 당연히. 강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대신 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청문은 거치도록 돼 있는데 대개

는 전문자격사의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는 그 해당 협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전문자격사 협회하고는 조금 이렇게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관련 법을 확인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에 따라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 외에는 또 어떻게 돼 있나요?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세무사 뭐 등등등……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당연취소 하게 돼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개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확정이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자격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아무래도 전문자격사에게 전문성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필요로 되고 또 거기에 더해 최근엔 전세사기가 워낙 피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자격 취소와 등록취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사에 대한 어떤 자격을 자동 박탈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게 과도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권익의 형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청문 절차는 있다라고는 했지만 징계 절차나 어떤 그런 것들 없이 당연취소된다고 했을 때에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위법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다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없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고형 이상의 형은 대개 고의라든지 위법성이 중대해 가지고 그런 금고형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아까 방금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 말씀했는데 조문을 잠깐 찾아보면 이게 ‘직무

관련하여'라고 이렇게 쓰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는 '직무 관련하여'라고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김남국 위원 '위반하여'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무 관련하여'라고 하는 게 직무 관련성으로 해 버리면 조금 더 모호해지고 확대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처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할 생각은 못 해 봤나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뿐만이 아니고 토지 관련 수용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평가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큰 위법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업무를 해야 되는 직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여쭙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회의 명확한 의견이나 입장 이런 것들이 청취가 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협회로부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번에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현재로는 금고형 2회 이상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판결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을 다시 징계위원회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청문절차라는 것을 새로 도입해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기동민 위원 27호 관련해서요. 아까 차관님……

○위원장 김도읍 예, 기동민 감사님.

○기동민 위원 27호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기동민 위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1년, 2년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보니까 한 9건의 감정평가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2년 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세 분이 그렇게 받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기동민 위원 9건의 감정평가사와 거기에 관련된 세 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3년 2월 2일 기준 전세사기 가담자 적발 현황을 보면 형사 입건된 1941명 중에 감정평가사는 0명이었다, 이 통계는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실무자가 말씀 주셔도 상관없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때 것은 감정평가사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현재부터 앞으로 나오는, 앞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 나왔던 전세사기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얼마나 관여하고 또 위법이 있는지를 현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동민 위원 이 조사는 없었던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토지국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예, 말씀 주세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남영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세분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물론 청문절차를 더 거쳐야 되기는 합니다만 이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통보를 받았던 15건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11건에 대한 심사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중에 9건의 감정평가를 했던 한 분에 대해서는 2년의 자격정지……

○기동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아까 그 얘기는 저하고 나눈 얘기에요. 그리고 저도 인정을 했고, 제가 금방 다른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0여 명 가까운 적발된 사람 가운데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 통계가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 통계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계획을 말씀을 주셨고.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남영우 그 통계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던 그 결과가 나왔던 건 아직은 아니고요.

○기동민 위원 아니, 감정평가사만 한 게 아니라 전세사기로 형사 입건된 1941명 중에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제가 무슨 타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자칫 과잉입법이 되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는 억울함들은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징계위원회도 가지고 있고 지금의 문제의식을 살려 나가면서 얼마든지 그분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적 통제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까 가지고 계신 통계가 있으면 좀 더 주시고, 저는 생각 같아서는 2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계신니까 적어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한두 번 정도는 더 점검해 보고 통계도 더 주시면서 저희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기동민 간사님 질의 내용은 명확해요.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 갖고 천구백몇 명입니까, 몇 건입니까? 지금 형사 입건된 게 맞습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경찰에서 현재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지금 기동민 간사님 갖고 계신 통계가 경찰 통계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동안에 저희가 경찰과 같이 한 숫자에 대해서는 주로 분양 대행업자라든지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데에 타격을 맞춰서 수사를 한 거고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수사에 착수를 해 가지고 관련되는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에 조사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기동민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941명이 형사 입건됐는데 그분들은 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타격을 다른 쪽에 근무하시는 업역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사기 문제가 또 심각하고 하니까 좀 해소가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동민 위원 한 번만 더 토론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면 뭐라 할 건데요?

○기동민 위원 한 번 더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지금 이 관련 법에 보면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49조에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고요. 50조에 보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습니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다음에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물론 직무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받는다면 아마 49조에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소위 청문 절차를 거친 자격취소, 그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조 위반의 경우가 발생할 텐데 거기서 이런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50조 위반의 행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집행유예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직무 관련 범죄행위라고 딱 규정을 해 버리면 결국 50조 위반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인 건 그것조차도 바로 자격취소로 받아들이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법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자격취소의 가혹성,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데 이 관련 규정을 49조에 규정돼 있는 그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과잉입법이라든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문제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개정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의견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현행 규정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된 규정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가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 따른 업무를 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회라고 해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횡수만 1회로 바뀌는 거고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긴 한데, 원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실제로 자격 취소라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권리나 모든 것을 박탈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관련 규정을 정리할 때 40조와 같은 경우라면 위반으로, 그러니까 40조에 규정된 각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1회의 경우에도 자격 취소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제가 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그동안 금고형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사기죄도 있고요, 아니면 특가법상의 배임수재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

가법 위반으로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든지 관련되는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행 규정의 취지가 직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범죄행위들을 상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2회 이상 한 경우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는 2회를 1회로 이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러한 법률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료법에 의사들에 대한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법이 나왔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의사 자격을 취소한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입법의, 그러니까 처벌의 과잉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조금 한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차관님은 소위 특가법 알선수재 이야기를 하는데 49조에 보면 거기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전·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리고 ‘유도·요구에 따른 경우’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다 이 조항이 규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초기 개정안에 있었던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언뜻 보기에 과실범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실범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2회 이상 금고,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무 관련 범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소위 업무상 횡령을 한 경우 그것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치화해서 조문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계속 우리 기동민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게 소위 전세 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감정평가사 관련 자격 취소 규정을 강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개별 조항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모든 부처에서 2소위 보낸다고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 특히 국토부에서는 2소위에 보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다 전체회의 계류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별 관계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2소위 위원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빨리빨리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전체회의나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어느 정도 법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은 전체회의, 정점식 간사님은 2소위.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이원재 차관님, 아마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54항 공항소음법 이게 법안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음지역 고시할 때 문자를 보내는 것하고, 이것 2차관님 소관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고시할 때 관에서 문자 보내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음부담금 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또 한 꼭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다른 법률하고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 2차관님이나 1차관님 소관도 있는지 모르지만 국토부에서 의무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도록 돼 있는 다른 법률들이 공항소음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게 아니고 도로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한 법률들에서 문자 발송하는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안들이지요? 지금 이 법률안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다른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위원장 김도읍 저희들이 다른 법률과 병합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를 하고 유기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만, 결론이 나는 것은 다른 법

률과 병합을 하여 처리하는데요.

유상범 위원님, 이것은 이미 문자 발송 시스템이 있고 순차적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연 책임을 지우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행정 절차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상범 위원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소음방지는 저도 법안 내용을 보니까 통지 방법에 대한 규칙 개정안 그다음에 가산금 부분, 그리고 가산금 체계를 과거에 100분의 3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일수 가산금으로 바뀌어서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국토부에서 보니까 약 20개 법률을 다 그렇게 변경하실 모양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산금 부분을 그렇게 다 변경하실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20개 법률을 한 번에 내서 이걸 한 번에 하자는 게 의견이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떡할까요?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차관님, 한 번에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는 한 번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되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뭐……

○유상범 위원 이 제도를 바꾼 것이 제가 봐서는 현재 불이행한 사람들이랑 페널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3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면 굳이 같이 안 해도 괜찮다면 저도

계류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부분을 철회하고 이 법안 그냥 통과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사실 저희 주차장법이 있는데요 그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빨리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러면 40번 산업단지에 관한 시설 준치 부담금도 같은 건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도 같지요.

○위원장 김도읍 같은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같은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40번이랑 54번이 같은 취지지요.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지금 54항과 관련해서, 이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구역 등의 지정·변경 시 그 사실을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하는 관련 통지제도고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소음부담금과 통지제도 부분인데 통지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해서 19개 법안이 계속 계류 중입니까? 예를 들자면 하천구역 지정과 관련한 하천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등 지정.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다른 법도 있는데 저희는 다른 법에 대해서 일부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 법까지 포함해서 총 20개 법안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되어 있는데 일부는 또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이런 형식이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일괄처리 안 되고 이 부분만 먼저 통과해도 된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니, 아까 저희가 특히 체납·부담금의 일수 계산과 관련해서 이런 법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우편 발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점식 위원 또 필요하다고 안 보는 법안도 있습니까, 나머지 19개 법안에서?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40번 법안은 일괄 통과해도 괜찮은 법안이고, 그것은 가산금 문제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법안은 통지제도 개선의 문제가 같이 있으니 좀 먼저 통과시켜 달라 이런 취지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위원 어차피 같이 인정해 줄 거라면 통과시키지요.

○기동민 위원 국토위, 환노위 같이 묶여 있는데?

○정점식 위원 예, 국토위와 환노위가 같이……

○위원장 김도읍 어느 법이요?

○정점식 위원 54번의 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괄해서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신규로 20개 법안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공항소음 방지법이 그중에서 1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항소음 방지법에는 우편 통지를 하게 하고 또 나머지 법안에서는 우편 통지가 도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라는 취지지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걸 제가 그래서…… 공항소음하고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이 이런 거예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금 전에 있었지요. 그다음에 도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빈집 및 소규모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유기적으로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고 차관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가능합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40번이랑 54번 통과시키지요.

○정점식 위원 일단은 이걸로 시범실시를 해 보지, 뭐.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32항·34항, 42항부터 44항까지 또 제50항·52항 및 제6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29항·31항·33항, 35항부터 41항까지, 45항부터 48항까지, 제51항·53항·54항, 제56항부터 59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제49항 및 제55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차관님 또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명소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906)

6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6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6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6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시2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66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모양이지요?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항과 관련된 기반시설 침해를 통지받아야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국가안전보장 관련해서는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다가 같이 공유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찰청은 통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서로 조율해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민간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공공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 발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규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과방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국정원 측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해 와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국정원과 상의해서 다음번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면 다음에 국정원하고 경찰청 등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주혜 위원 아니요, 저 있는데요.

○유상범 위원 저희도 바쁩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아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몇 항?

○유상범 위원 61항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 지역채널에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시겠다고 해서 이 법안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법안에 의하면 지금 혜택받는 곳이, 어디가 혜택받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국회방송과 KTV 그다음에 방송대학방송, 이 세 방송을 공공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 방송 송신을 허용하는데 그러면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다른 채널들이 많잖아요. 아리랑TV도 있고 EBS 플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공공채널이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거기서는 공공채널이 아니고요. 현재 이 개정안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에 현재 지역 관련되는 보도 이외에 다른 보도 내용은 신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국회방송과 KTV 같은 것도 지역채널에 좀 틀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여서 저희들이……

○**유상범 위원** 공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좋은 방송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면 다른 방송들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다른 방송들도, 여기 보면 EBS나 아리랑TV·다문화TV 같은 이런 것들 전부 공적인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방송이, 내용이 다 여러 가지로 똑같이 지역방송을 통해서 나가도 문제없을 듯 한데 그와 같은 차별을 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보도 이외에 지금 말씀 주신 다른 EBS 교육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데 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도 기능 때문에, 보도·논평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범 위원** 글썄요 보도·논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방송이 특정 부분을 계속 보도·논평을 트는 것도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공공채널을 의무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현재 의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의무 편성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굳이 추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 채널은 채널대로 나가면서도 지역채널에 추가적으로 보도와 논평을 해제해서 실제로 그것을……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말이지요 만드시면 다양한 지역방송에 다른 채널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결국 국회방송과 방송대학TV만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논평·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어떤 방송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이렇게 되면 일반성이 없어지고 특수성이 생겨버리잖아요, 법이라는 게. 다른 데와 차별을 두고 이렇게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제기한 문제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논란이 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2소위에서 다른 공공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공익채널들에 대해서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소위 회부를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저도 같은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

○**위원장 김도읍** 같은 취지이십니까?

○**전주혜 위원** 예, 같은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 잠깐만 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일단 조금 전의 61항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지금 지역채널에는 이미 공공채널, 말씀드린 대로 국회방송이나 KTV 같은 공공채널이 케이블방송에 의무적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채널에 다시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협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역채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공채널이라고 하는 좋은 콘텐츠가 추가돼서 다양한 콘텐츠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과방위에서 동의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견이 없는 법안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다소 논쟁 소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과방위에서 이 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한마디 더 할까요?

○위원장 김도읍 아닙니다, 두 분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제6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제6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6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제출)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시2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2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와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70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이러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5항에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등으로 돼 있어요. 실장님,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소관인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 30조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가부와 의견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체회의 계류를 해서 여가부와 의견을 조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견은 2소위 회부입니까, 전체회의 계류입니까?

○전주혜 위원 여가부 의견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이것 관련해서, 교육부 기초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여가부와도 협의가 된 걸로 들었고요. 특별히 여가부의 이견은 없던 걸로 알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다음 전체회의 때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

했다고 그러는데 기재부하고 의견 조율이 된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조율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노인평생교육 시설이나 자발적 학습모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지방이양 사무이고 이미 같은 법 16조 1항에 근거하여 경비 보조·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부도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0조의3제3항 및 21조의4 제1항의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항 말씀 올립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수정의견에 그렇게 넣어 놔줍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70항 전체회의 계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위원장님, 72번 학원법 관련해서 한 가지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이미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됐습니다만 동 법률 제5조제4항을 개정할 경우 법률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일을 고려하여 시행일 연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조제1호제사목의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부분으로서 바로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예,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반영시켰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예,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제6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제72항 법률안은 대체토론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감사합니다.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9시3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3항·제74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님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군인사법이나 군인연금법이 보니까 의료법 조항 개정이 돼야지 법률 효과가 있네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께서 또 어떻게 아시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네요. 의료법 개정안 발의된 게 올라오면 그때 일괄 처리하는 걸로 정리해야 될 법안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강완구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 상임위에 계류시켜서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강완구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요, 유상범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군인연금법은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법률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강완구 군인연금법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둘 다……

○정점식 위원 73, 74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73, 74 같이 하는 겁니까?

○정점식 위원 예,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금 전에 73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상범 위원 72, 73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도읍 73, 74라고 말씀하셔야……

○유상범 위원 혼미해졌네요, 저도.

(웃음소리)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및 74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7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19시3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방기선 기재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75항부터 77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기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

○정점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도읍 시간이 지났습니다.

(웃음소리)

○정점식 위원 부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정점식 위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소위 부처 간 이견이 있다라고 하고 뭐 단서조항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그 부분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다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이 부분만 삭제하면 별도의 부처 간 이견은 없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그 삭제하는 것에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정점식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 김도읍 수석님, 정리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지금 저희 검토의견이 하도급법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해 주시면 그 단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께서도 설명이 계셨고 수석전문위원 답변도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위원장님을 차관님으로 조금 전에 호칭을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남국
김도읍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형수	유상범	이탄희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조수진
조정훈	최강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강완구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영진		
산업정책관	최우석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환경부차관	유제철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		
제2차관	어명소		
토지정책관	남영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경찰청장	윤희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	-----